

제391회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2월2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62)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3)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7)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9)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8)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5)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57)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5)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38)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6)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84)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17)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18)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6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75)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26)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69)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78)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35)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96)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73)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63)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60)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65)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21)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15)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3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65)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89)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29)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93)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9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2)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1)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8)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26)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5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89)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25)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5)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60)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1)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2)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96)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0)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9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04)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57)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32)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41)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52)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47)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79)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2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45)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01)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14)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0)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1)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3)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7)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3)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6)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01)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67)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77)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07)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1)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67)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69)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30)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0)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7)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9)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15)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82)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10)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44)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1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7)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48)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9)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03)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11)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17)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38)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6)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7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83)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2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04)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92)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03)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72)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35)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48)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5)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1)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00)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40)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82)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40)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1)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3)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5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2)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98)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08)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47)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50)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1)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73)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93)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0)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92)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94)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37)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6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86)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95)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97)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500)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506)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525)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7)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88)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6)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9)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2)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8)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6)
1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7)
1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91)
1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06)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26)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8)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30)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32)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96)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77)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19)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37)
1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68)
1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44)
1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06)
1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5)
1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9)
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97)
1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18)
1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19)
1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49)
1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73)
1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45)
15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03)
1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31)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95)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30)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1)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4)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2)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2)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51)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85)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74)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48)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02)
1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28)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26)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01)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03)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28)
1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09)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2)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23)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1)
1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1)
1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72)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4)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38)
1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50)
1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72)
1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44)
1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04)
1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29)
1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27)
1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94)
19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06)
1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27)
19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4)
1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3)
19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3)
19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26)
1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52)

상정된 안건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2) 10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3) 10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7) 10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10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8) 10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05) 10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7) 10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5) 10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 10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6) 10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	10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7)	10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8)	10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1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5)	10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6)	10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69)	10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78)	11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11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6)	11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73)	11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3)	11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11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5)	11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11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	11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5)	11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89)	11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9)	11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93)	11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7)	11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2)	11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1)	11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1)	1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8)	11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2)	11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6)	11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11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7)	11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11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11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5)	11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0)	11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1)	11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2)	11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11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0)	1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7)	11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11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7)	11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2)	11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	11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2)	11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7)	11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9)	11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8)	11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5)	11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1)	11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4)	11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0)	11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1)	11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3)	12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7)	12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3)	12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6)	12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1)	12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7)	12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7)	12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7)	12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1)	1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12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7)	12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9)	12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0)	12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0)	12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7)	12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9)	12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5)	12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	12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0)	12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12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2)	1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7)	12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8)	12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9)	12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3)	12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12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7)	12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8)	12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6)	12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1)	12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3)	12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6)	12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4)	12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2)	12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3)	12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2)	12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5)	12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8)	12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5)	12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1)	12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0)	12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0)	12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2)	12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40)	12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1)	12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3)	13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13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2)	13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8)	13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8)	13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7)	13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0)	13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1)	13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3)	13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3)	13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20)	13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2)	13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4)	13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7)	13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3)	1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6)	13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5)	13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7)	13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0)	13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6)	13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5)	13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7)	13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13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6)	13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9)	13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13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8)	13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6)	13
1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7)	13
1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1)	13
1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6)	13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13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13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13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2)	13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13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7)	13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13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13
1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8)	13
1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4)	13
1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6)	13
1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5)	13
1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13
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7)	13
1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14
1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9)	14
1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9)	14
1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14
1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14
15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14
1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14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14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14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14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14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14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14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14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85)	14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14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14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14
1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14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14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14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14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14
1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9)	14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14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14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14
1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14
1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2)	14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14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14
1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14
1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14
1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14

1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14
1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14
1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14
1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14
19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14
1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14
19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14
1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14
19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14
19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14
1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14

(09시36분 개의)

○소위원장 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방세법 관련 심사를 위해 연일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 자료 마지막 권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지난 두 차례의 회의에서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후 각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한 11시 50분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의총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2시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순연을 하게 되면 그때 상임위 소위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어쨌든 아침 10시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봐야 9일 날 본회의 때 이게 통과가 될 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안 되면 8일 날까지 해서 바로 넘겨도 법사위에서 양해를 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그것은 조금……

○소위원장 박재호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

그래서 안 되면 인사청문회 하는 월요일 날 오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속도를 좀 내셔서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2)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3)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7)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8)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05)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7)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5)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6)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7)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8)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5)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6)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69)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78)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6)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73)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3)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5)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5)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89)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9)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93)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2)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1)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8)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6)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5)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0)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1)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2)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0)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7)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2)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2)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7)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9)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5)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1)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4)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0)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1)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3)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7)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3)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6)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1)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7)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7)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7)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1)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7)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9)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0)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0)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7)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9)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5)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0)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7)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8)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9)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3)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7)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8)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6)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3)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4)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2)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3)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2)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5)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8)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5)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1)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0)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0)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2)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40)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1)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3)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2)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8)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8)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7)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0)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1)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3)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3)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20)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2)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4)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7)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6)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5)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7)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0)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6)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5)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7)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6)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9)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8)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6)
1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7)
1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1)
1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6)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2)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7)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1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8)
1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4)
1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6)
1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5)
1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7)

1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518)
1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9)
1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149)
1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1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15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1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085)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74)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48)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002)
1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28)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626)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601)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03)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02728)
1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909)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552)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823)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521)
1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671)
1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772)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974)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438)
1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50)
1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72)
1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44)
1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004)
1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29)
1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627)
1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594)
19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06)
1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27)
19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554)
1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673)
19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973)
19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426)
1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52)

(09시38분)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7항까지 이상 197건의 법률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역시 행정안전부를 대표해서 고규창 차관님 출석했고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법안소위에 저희 소관 법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도 정부 입장을 가능한 한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 쟁점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도록 적극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지역자원시설세 심의를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서승우 행정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서승우입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박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충청북도 지역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지금 말고요, 나중에.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우석 소재융합산업정책관님 나오셨습니다.

안 오셨어요? 나중에 오시겠지요, 나중에 인사해 주시고.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주제별로 검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법안 심사자료 5-2,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묶여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편집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법안 심사 때부터 조금 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부분입니다.

자료 1쪽은 화력발전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으로서 여기구 의원안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을 0.3원/kWh에서 2원/kWh으로 인상하는 내용이고 김태흠·이명수·박완주·배준영 의원안은 1원/kWh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당시 행정안전부는 인상에 찬성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 온 바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외부불경제 효과, 탄소중립정책 등을 이유로 세율 인상에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으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문제에 따라서 구체적인 검토 후에 대안을 다시 마련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적정 수준의 세율 인상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래서 얼마 정도 하기로 그때 결정을 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여기서 논의가 되기로는 석탄과 LNG를 포함해서 현행 킬로와트시당 0.3원인 것을 0.6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산업부와 논의가 있었고 관계 기관 간에 거의 합의 수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일단 조건부 수용으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 위원님.

○이영 위원 이게 법안을 이것 하나만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국회 내에서 논의가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 유기적으로 보면, 제가 비유를 들게요. 암환자가 있는데 무조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과연 수술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 수술 뒤에 평생 약을 먹어야 되면 부작용이 없는 약이나, 왜냐하면 수술도 하는 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렸을 때 아까 위원장님도 차관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을 때 실제 해당되는 산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시뮬레이션이. 그것은 다 한번 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미 산업부를 통해서 혹시 국민들께 전기료 인상으로 이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선도 검토를 했고요. 특히 전력업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도 검

토를 했는데 저희가 0.6원으로 올렸을 경우가 한 1000억대 정도의 세수 증가가 지방에 있고요. 전력사 입장에서는 거의 조 단위의 영업이익과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영 위원 그 자료 지금 저한테 바로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탄소제로 중립으로 가면서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고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가져가야 될 정책이라고는 보는데요. 진행 속도와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전 5사의 매출액이랑 당기순이익이랑 부채비율을 봤는데요. 작년이지요, 작년 들어서 전체가 당기순이익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그리고 이미 3년 전 2018년부터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들어와서는 그 규모가 굉장히 커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부채비율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요, 매출 규모도 줄고 있어요. 제가 표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했을 때 발전사의 재무 상태가 지금도 최근 2~3년간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당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바로 0.3원에서 1원 올리면 적자 규모가 연평균 발전사별로 200억 정도가 증가돼요.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발전사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 위원 그러면 이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갖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위원님, 발전사 전체의 경영수지를 가지고 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이 특정되고요.

○이영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의 취지는 아는데 제가 동의드릴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발전사 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경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탄소중립에 따라 가지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강압적으로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경영 관련한 내용을 조정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2~3년간에 대미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임기 중에 절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곤 했는데 그 부분 굉장히 우려를 했었거든요, 무리한 탈원전부터. 결국 최근에 인상 얘기하셨잖아요.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톱 떨어져 가지고 이 사안 하나만 보면 저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이 법안을 검토하기 이전에 생긴 히스토리와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재무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시행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적어도 그 부분을 설득하시려면 재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맷집 있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1448억이에요. 2015년·16년에는 당기순이익이 5800억, 4800억이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 하나만 이러면 남동발전의 문제로 볼 수 있지요, 경영 잘못해서.

남부발전 볼게요. 2015년에 당기순이익이 2215억이었어요. 2019년, 2020년 당기순이익이 342억, 74억,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2015년·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이익이 4000억, 5000억대인 회사예요. 지금은 전체가 마이너스로 다 돌아섰고요. 당기순이익이 제일 큰 데가 -1500억 나고요. 800억, 400억 다 마이너스예요. 몽땅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얼마가 줄었는지 아십니까? 많이 줄었을 때는 한 7000억씩 준 거예요. 이게 공적자금이 들어가면 모를까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회사가 한 5년 만에 당기순이익이 한 5000억대로 줄어 버리면 이것 차입으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진행 속도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딱 떨어트려서 자원시설세를 그 지역에 한정되니까 일단 얼마로 올릴까, 이것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회사가 차입금 아니면 버티지 못하는데 전기료가 안 올라갈 수 있다고요? 차입금 들어오면 이자가 더 들어가 가지고 이미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나는 속도가 굉장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가속화돼요.

○소위원장 박재호 산자부 안 나오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앞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산업부 소재산업국장 최우석입니다.

저는 오늘 시멘트 관련해서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석탄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발전사가 그동안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경영이 좋았을 때는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충분히 부담했는다고 하는 지역의 반론이 있고요. 늘 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논의가 나오면 발전사들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댁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한정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발전사들의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가 누적돼 있었고요.

산자부가 발전사와 충분히 논의를 했고 저희 행안부와 산자부가 논의했을 때 0.6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일부 시행 유예기간을 두자라고 하는 부분……

○이영 위원 차관님, 제가 발전사에 있는 분 한 분도 만난 적이 없고요. 이것은 오늘 법안을 떠나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올해 1년 내내 에너지정책을 보면서 우려했던 부분이고요. 전기료가 상승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라고 봤던 부분이에요. 만약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수용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산자부랑 다 해서 이것 시뮬레이션했다는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저는 이 시설세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지금 이런 식의 경영 악화에 간 부분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면 정말 땅 파 가지고 돈 나오지 않으면 차입해야 되고요, 차입하면 이자 내야 되고요. 지금 5년 내내 안 하겠다고 한 전기요금 인상했는데 이것도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것을 저는 보장을 못 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좀 들어 보고 또 합시다.

○이명수 위원 제가 발의한 입장에서 자꾸 거듭 주장하기는 그런데 자원시설세를 우리가 어쨌거나 이 체계를 조정하는 문제인데 아까 정확히 이번에 세율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줄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명수 위원 0.6원, 이렇게 0.6원 정도 인상될 때 전기요금에 어느 정도 전가가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기요금, 예를 들면 kWh당 0.6원이 아니라 1원으로 인상했을 때 가구당 월평균 88원 증가하는 것으로, 0.3%의 인상률이 있는 것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자료를 냈습니다.

○이명수 위원 88원. 그런데 이런 세율 인상이 전기요금으로 인상되는 것과 자체 내부적인 어떤 경영 혁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화하는 부분이 대개 어느 정도 포션으로 와야 돼요? 산자부에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글썄, 그 부분은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흡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발전산업은 발전뿐만 아니라 송전, 배전의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송전탑 하나 세우기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전사의 입장도 이해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산자부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장기적으로 이 에너지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가져가려면 합리적인 세제인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논의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적정 수준의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에너지정책 상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명수 위원 지금 차관님 말씀이 산자부, 정부 의견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사실상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맨 끝에 보니까 조건부 수용에 kWh당 0.3원에서 0.6원 그리고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탄소세 도입 시 재논의를 한다 이 조건으로 산자부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는 좀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논리를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 또 국가 전체를 봤을 때의 입장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아마 산자부하고 의논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정부 안대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2년 유예라서 좀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렇게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장님, 정부안이 아니고요. 의원님들 입법안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재호** 수정해서 정부가 만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가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원님들 의견도 다 수렴하고, 의원님 안을 다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하였고 산자부하고도 의논한 결과 이렇게 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은 앞서 보셨던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과 함께 제출하신 안입니다.

이 부분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의한 지금 예측되는 세수의 변화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과 과거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편입 당시에, 처음에 이 세금이 생길 당시에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입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앞에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탄력세율까지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어제도 주민세 관련돼서 잠깐 나왔는데, 조세를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조세는 법률주의가 맞고요, 탄력세율을 조례로 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형동 위원** 케이스가 많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세의 세목, 기본 세율은 다 법률로 정하고요. 다만 조례로 ±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일부 가감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9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서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으로 과세 중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나누어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소요와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그리고 발전업계의 부담 및 관련 부처의 입장 등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변 지자체들과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관계 부처와의 논의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현재 상태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민철 위원** 여기 산자부 나와 계세요?

○**소위원장 박재호** 나와 보십시오.

○**김민철 위원** 여기에 보면 이 법안에 대해서 산자부 입장은 신중 입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류재형** 맞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측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도 되고 그리고 비상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품만 지원하면 되는 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류재형** 비상계획구역도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돼 있는데 물품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물품 지원하는 데 예산을 좀 세워서 하겠다는 걸로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왜 반대 입장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류재형** 물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되지는 않았고요. 세금에 대해서……

○**김민철 위원** ‘협의하겠음’ 그렇게 해 놔는데?

아무튼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했으면 국가에서 어떻게든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원자력발전소가……

이런 경우예요. 경계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계선에 있는 부분의 5km 안과 경계선 밖에 있는 5km가 있어요. 그리고 20km까지, 그런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지금 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류재형** 현재 지방세 과세 체계가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여기는 킬로수는 왜 정해 놓은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류재형** 킬로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재 대책 마련을 위해서 비상계획구역을 사업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킬로수를 정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원자력발전소 시군만 정하면 되지 왜 킬로수를 정해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류재형** 지금 현재는 시군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러면 그걸 시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류재형**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인근 지역까지 넓히는 문제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 지역과 협의가 좀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법률적 문제나 지자체 간 이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이견이 아니라 5km라 그랬으면 5km 내의 어느 지자체가 됐든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20km라고 비상계획구역으로 정해졌으면 그 안에 포함을 시켜야지 그걸 발전소가 있는 시군만 포함하고 그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킬로수의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

드리는 거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류재형** 지금 그 5km 이내의 지자체는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서 별도의 지원이 또 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 킬로수를 정하고 들어갈 때…… 원안위에서 정하는가요,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류재형** 5km는 원안위가 정하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안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군은 어디에서 정해요? 원안위에서 그것도 정하나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류재형** 시군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나는 참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킬로수가 의미가 없고 법에 그냥 시군만 정해야 되는데, 저는 5km 기준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차관님, 지금 현재 들었다시피 인근 시군이 있는데 그 킬로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똑같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경계선에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포함……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지자체별로는 원자력 관련해서 여러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영향 범위를 좀 더 넓히고자 하는 거고요. 그 킬로수 범위가 자꾸 넓어지면 과세할 수 있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그러면 원자력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과세한 재원의 배분에 관한 문제들도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이 부분은 원안위 같은 곳을 통해서 킬로수 자체에 대한 검증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김민철 위원** 비상계획구역을 왜 늘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것은 당연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영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왜 늘렸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늘리는 건 방사선에 대한 안전 대책을 좀 더 하자는 취지로 늘렸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게…… 방

독면 사 주고 이런 물품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필요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비용을 예를 들어 지자체가 이렇게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요, 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인과관계가 명확한 부분은 국가와 시설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그 외 지역에서 불경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제로 해결하자는 노력의 일환인데 이 부분은 원자력발전 전체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결정하시기에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철 위원** 원안위나 행안부에서 정해서 시군별로 하든 킬로수를 없애든 그 결론을 내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저희도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본질적인 것이고 신중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결론에 있어서 큰 저거는 없습니까 다마는 이게 확대되면 납세의무자가 누구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원자력시설입니다.

○**김형동 위원** 원자력, 한수원이 내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그런데 한수원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한수원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담세 능력이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담세 능력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순리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그런데 지금 더 넓혀 가지고 한수원이나 한전 이런 에너지 기관들이 수익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경영의 상태나 수익의 상태에 비례해서 부과할 수 있는 성격의 세가 아니어서……

○**김형동 위원** 그것은 그 지역의 이런 분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원인제공자인 한수원이 세금을 더 내서 국가가 그걸 집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물론 그렇게……

○**김형동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신중 검토에 석 줄 적지 마시고 제세금 부과 기본 원리에 대한 것을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제가 이 이야기는 좀 드릴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과 또 아까 이야기했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반경 5km 내로 하니까 한 군이나 한시가 포함돼서 거기에 자원시설세를 했는데 방사선 구역이 커지면서, 한 20km 이렇게 넓혀지면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인자가 어느 정도 세금을 내서 그 시설을 해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돈을 많이 받으니까 지자체가 도로도 깔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니까 옆 지역에서 우리도 똑같이 피해를 보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특히 인근 지역에 원전이 있는 곳은 그 옆 지역이 오히려 더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쪽 군에 소속돼 있는 것만 받는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원시설세를 만들 때 우리 행안위하고 산자부하고 산자위하고 다 좀 연결해서…… 이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 너무 많이 밀집돼 있어서. 또 핵폐기물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하는 걸로…… 어쨌든 연구는 좀 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또 윤준병 의원님이 냈으니까 의원님한테도 자료를 갖다 드려서 언제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4쪽입니다.

박주민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도 원자력발전 관련으로서 현재 발전량 기준으로 과세 중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특히 영구 정지된 발전소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전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원자력발전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다른 개정안들이 있는데 이것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전력가격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 이하에서는 신규 과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들이 죽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서 29쪽까지는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 신규 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생산량 톤당 500원 신규 과세하자는 의견과 톤당 1000원을 신규 과세하자는 의견 이렇게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행정안전부 입장은요?

정부 측 입장.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 부분이 좀... 저희 행안부와 지역의 입장은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 업계와 산자부의 입장이 완전하게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논의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산자부도 앞에 좀 서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산자부나 또 행안부 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이 시멘트 업계와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 문제를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지난 해에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반대 논리는 제가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전해 듣고 있는데 지금도 그 입장 변화는 없나요,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걸 반대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멘트 산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석회석 광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 와중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 환경부담금이 지난해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환경시설 관련해서 유지·보수·운영에 대해서 비용이 1000억 이상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는 별도로 환경부담금이 금년에는 150억, 내년에는 기준이 강화되어서 180억을 더 지출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NDC, 즉 탄소중립을 위해서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한 3300억 정도의 부담이 신규로 돼야 될 것으로 지금 업계하고 산업 전문가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규로 환경에 대한 지자체 측면에서의 과세는 부담이 된다는 업계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한번 과세가 되면 지금 석탄에서도 그렇다시피 계속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달리 산업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상황입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부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국내에서 제조 여건을 강화하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며 밖에 있는 기업체의 리쇼어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물·대기·토양, 그다음에 화학물질에 대한 기존의 환경규제가 다 있습니다.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업계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역시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목표가 부과되어 있고 이를 산업계와 무수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겨우 국가적인 목표를 도출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거와는 달리 지역에서 환경 관련해서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철강·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등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한다는 움직임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정책과 환경정책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를 필두로 한 지역재정정책 간의 원칙과 산업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담을 해서 기후환경위기대응기금이 라는 걸 마련했는데 국가 재정이 당초에 세수가 34조 원, 33조 원 남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50조 원이 넘게 세수가 추계가 더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없이 시멘트만을 먼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면밀히 논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체와 산업부 입장을 죽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예.

○이형석 위원 국장님, 자동차나 이런 일반 제조업과 시멘트 제조가 지역에 미치는 환경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다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예.

○이형석 위원 (자료집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제가 올해 국정감사 때 냈던 정책자료집입니다. 이거 정책자료집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아직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형석 위원 정책자료집도 보시지도 않고 와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여기 지금 눈 내리는 것같이 보이는 것이 시멘트 공장이 있는 인근 주택의 지붕입니다. 이게 공룡알처럼 보여요. 그 지역 인근 담의 돌들이 시멘트로 쌓여서 공룡알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멘트 업계의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수익이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형석 위원 정확한 수치도 보지 않고 어떻게 와서 답변해요, 지금 업계가 어렵다고. 12.2% 증가했어요. 경영에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환경부담금, 환경부담금 어디에 쓰이지요? 지역 주민들의 외부불경제 해소에 쓰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타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에 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환경부의 환경특별회계로 아마 귀속이 되어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쓰일 뿐이지

지역 주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이나 또 지역 경제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재정 당국에서 지자체 간의 재원에 대한 정확한 역할 분담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런 원칙들은 추후에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시멘트 제조 공정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든 정부가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부담금은 별도의 환경부담금이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또 그 수혜를 받는 수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업계 내에서 자꾸 제가 지역자원시설세, 시멘트 공장과 관련된 이 법률을 만들려고 하니깐 이걸 기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추세들을 보여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기금에 대해서도 157억 원이 어떻게 쓰였느냐 자료를 내 달라고 했더니 자료 제출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추가로 기금을 조성했던 것도 보니까 저희들이 당정청 협의를 하는 날 급박하게 업계에 통보해서 기금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임기응변식으로,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시기만 넘어가려는 게 업계의 대응 논리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산업부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만 대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의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새로운 지역자원시설세를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과 또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산업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전향적으로 나와 줘야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역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종합적으로 환경 개선이나 탄소중립 정책에 쓰여지는 것은 맞지만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만든 이유가 그런 종합적인 대책과 특정한 지역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쓰여질 재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업계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지역자원시설세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도 비약이고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사정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최우석 정책관은 좀 들어가게시고 시멘트세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나온 행정부지사, 서승우 부지사님 말씀을 잠시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부지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서승우입니다.

먼저 오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심의시 충북 입장, 우리 지역 주민 입장 발언 기회를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는 단양 지역이나 강원 지역에 많습니다. 시멘트가 71년부터 생산이 돼서 60여 년간 많은 시멘트를 생산하고 그거에 따라서 업계는 막대한 이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 주변에서는 시멘트 생산에 따른 분진·미세먼지·질소 화합물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가 됐고 아까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대학교에서도 환경보건센터에서 시멘트 분진과 기관지 손상에 대해서 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요. 국제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2020년 자료가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8년부터 15년까지 매년 특히 16년도에는, 시멘트 공장의 법정 허용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최소한의 기준을 지켰을 때 각종 환경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조사를 했더니 또 유의미하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지역들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대부분이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단양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시멘트가 생산되고부터는 7만 2000, 7만 3000명의 주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2만 9000으로 60%가 줄어서 4만 3000명이 줄었습니다. 영월군도 그 당시에는 9만 5000명인데 지금은 3만 8000명으로 5만 6000이 줄어서 심각한 인구감소 지역이고요.

이 지역의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전국 평균은 45%인데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의 시멘트가 생산

되는 지역은 많은 데가 15% 적은 데 단양 같은 경우는 11.6%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과세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시멘트 생산과 유사한 외부불경제를 유발시키는 원자력·화력 같은 경우 원자력은 2006년 또 원자력이 들어오고부터 제가 그때 지방세제정책과장을 했었는데요. 원자력뿐만 아니라 더 환경을 유해시키는 화력발전도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돼야 된다고 해서 8년간의 논의를 거쳐서 2014년에 들어왔습니다. 14년에 들어오다 보니까 환경 유발시키는 것에서 대기오염 배출량 1위가 발전업이고 두 번째가 시멘트 제조업입니다.

이것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논의를 하고 19대·20대·21대에 걸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7년, 이제 8년째이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원인자 부담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주민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은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들도 건의를 했었고요. 시장·군수도 공동 건의를 했고 생산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 공동 건의, 시군의회·시도의회 의장단도 그 전에도 건의서를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0년에 일제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공동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이 기금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극소수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걸리면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65%는 해당 시군에 가고요. 저희 광역자치단체도 특별회계를 만듭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35%도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의 건강이라든지 환경 개선, 지역 발전에 쓰고요.

저희가 이번에 국비 사업을 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멘트 생산 지역에 있는 CO₂를 매일 한 50t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공정열을 이용해 가지고 메탄올과 DME, 디메틸에테르를 만들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에 300억이 들어갑니다. 이거 할 때도 국비가 200억이지만 지역에서도 30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만약에 35%라는 그런 재원이 있으면 그렇게 환경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이형석 위원 부지사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쭙 볼게요.

아까 산업부 국장께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이 되면 환경부담금하고 이중과세의 성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제가 답변에 대해서 다시 역으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게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자원에 대한 자원보전, 환경보호자원분이 있고요. 하나는 환경의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시설에 대한 시설세거든요. 소위 말하는 석회석이라는 것은 지역 자원을 이용하는 데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석회석은 생산하는 사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멘트라는 것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자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멘트 제조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이형석 위원 이중과세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예, 이중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법무공단이나 여러 전문 단체·법인한테 확인해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광역지자체에 배분되는 35%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나 충청북도 공히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지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예, 일반회계가 아니고 강원도는……

○이형석 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예, 특별회계로

해서 해당 목적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강원도나 저희가 조례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최춘식 위원님 하시고 다음 이영 위원님.

○최춘식 위원 부지사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예.

○최춘식 위원 저는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단양군 매포읍 출신이에요. 매포읍에 지금 시멘트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제가 알기로는 다섯…… 저희 지역에……

제가 통계 잠깐 보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매포읍에만요.

팬썰입니다. 퀴즈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냥 하세요.

○최춘식 위원 예, 그냥 하십시오.

성신화학하고 한일하고 현대 그렇게 3개 있지 않아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예.

○최춘식 위원 제가 어릴 때 크면서 그 지역에서는, 우리는 까만 교복 세대입니다. 그것을 입고 다니기가 어려웠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시멘트 공장·회사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게 그때였거든요. 그때는 왜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재를 못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2006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최춘식 위원 제가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때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은 업계의 입장을 생각했던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그때는 경제발전 차원에서 시멘트업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기준에 대해서……

○최춘식 위원 환경을 돌보지 못하던 그런 시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예, 그것은 정부 정책적으로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이 좀 해소되고 업계 이윤이 더 확대되니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매포읍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매포 쪽에는 기금관리위원을 세 사람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집중적으로 시멘트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충청북도도 그렇고,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군에서 말은 못 하지만 도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의견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그대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특히 충청북도가 지금 그래요. 이것을 제가 지난번부터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적 합의를 거쳐 가지고 오면 굉장히 쉬울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러한 과정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힘겨루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지역에서 그렇게 원치 않고……

지금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현황을 보니까 쌍용은 동해시하고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범을 했어요, 9월 9일 날. 그리고 삼포는 삼척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한라는 강릉시하고 7명 중에서 4명을 확정하고 3명은 협의 중에 있어요. 쌍용은 영월하고 협의 중에 있고, 단양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계에 있는 거고, 제천시만 지금 유보적 입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지금 도의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여요.

지역주민들은 정말 도에서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전화 받은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지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춘식 위원 예, 그러세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사실 좀 전에 원자력이나 화력에 대해서도 주관하는 부처와 행안부와 지역의 얘기는 다를 수 있고요, 시멘트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께 전화 주셨다는 것은 해당 지역, 예를 들면 단양은 매포읍에 있는 일부 분들은 기금을 조성해서 오로지 그 매포읍에 있는 피해 주

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가 된다고 그래서 단양군, 의회 또 부단체장, 군수 다 만났습니다. 아까 이형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업계에서는 이제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성신양행이나 이런 데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했다 그러지만 94억이라는 기금 중에서 대부분 81%는 다 자기네들 시설 개선하는데 썼으면서 공익기금을 냈다고 그러합니다. 이제까지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다가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를 한다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250억을 조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금은 사실 업계가 힘들다고 그러면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영업이익이나 업계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 불경제에 대한 과세거든요. 지속성도 안 되고 있고요. 만약에 힘들어서 못 내겠다 그러면 못 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있고 재원 규모도 업계에 따라서 ‘우리는 힘드니까 10억만 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톤당 얼마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거고요.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최춘식 위원 잠깐만요. 외부불경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지금 배출권거래제라는 것도 시행이 되고 있지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예.

○최춘식 위원 환경부담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요. 이걸로 해결 안 됩니까?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일단은 제가 자료로만 보면요, 시멘트업계 메이저가 7개 사입니다. 7개 사를 보면 배출 거래를 통해서…… 자료에 보면 19년도에는 687억, 20년도에는 672억, 탄소중립 관련 부담금이 크지 않아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그러합니다. 물론 이런 데서 자기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워낙 배출 지역이니까.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물어보려고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시설 투자를 해서 계속 그걸 같이 해야 되는데……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느냐를 내가 여쭙본 거고.

그다음에 이게 세금으로 부과돼 가지고 1000원

이든 500원이든 가게 되면 결국 시멘트값 상승으로 가고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또 그것이 건설비용 증가, 부동산 가격의 증가도 우려된다는 것은 각계 업계에서 다 우려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역적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에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행정부지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톤당 1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먼저 법안이 발의됐으니까 1000원을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시멘트 가격 인상은 0.8%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연구기관에 맡겼더니 0.004% 상승이 된답니다.

물론 지금 시멘트가 71년부터……

○최춘식 위원 시멘트 가격이 그렇다는 겁니까?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예, 소비자물가는 어느 정도…… 시멘트 가격은 0.8% 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 톤당 1000원이라면요. 500원이면……

○최춘식 위원 시멘트 가격이 그러면 그다음에 건축비용, 나중에 주택 구입비용에까지 영향이 어떻게 미친다는 계산 다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지금 이영 위원님하고 또 이명수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고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견 들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리고 부지사님, 가능하면 답변은 짧게 하시고 물어볼 때만 답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영 위원님.

○이영 위원 저는 법을 볼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당사자가 돼 보는 연습을 하는데요.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주민으로서의 입장과 또 시멘트업계에 있는 종사자로서의 입장을 봤을 때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의 것을 항상 선택하려고 하는데 양쪽의 의견을 들었을 때 참 팽팽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솔직

히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님은 아까 자료까지 다 보여 주시면서 그 폐해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데 산자부의 국장님 얘기를 들어도 기업인 출신인 저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산자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면서 들어 봐 주세요.

제가 과세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데 좀 봤더니 개별소비세가 있고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고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부담금이 있고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여쭙볼 게 아까 미세먼지 환경부담금이 작년에 신설됐다고 그랬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 위원 이게 대기오염물질 배출부담금이랑 같은 말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 위원 아까 부지사님은 원자력은 2006년, 화력발전은 2014년에 이것이 신설됐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위가 시멘트더라고요. 그러면 시멘트는 당연히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변한 게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NDC 상승해야 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급망 위기 상황이 온 것이 맞더라고요. 보니까 제조원가 40% 차지하는 유연탄이 최근 들어서 가격이 한 3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시멘트업계가 냈던 환경비용부담금을 봤더니 기존에는 원료에 해당하는 석회석에 대해서 지불하고 있었는데 연간 25억 정도를 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배출부담금은 150억 정도를 냈어요. 그러면 사실은 합쳐야 175억 정도가 냈던, 감당 가능한 범위였는데 이번에 시설세가 가면 250억에서 500억 정도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기존에 냈던 것에 비하면 이게 몇 배라고 그래야 되나요? 작게는 2배고 많게는 3배 정도, 3배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을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하게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 무조건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정된 환경투자비용이 1000억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175억 정도

감당을 했던 것을 1425억에서 1675억까지 지금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급망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쇼어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주셨고요.

게다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봤더니 환경개선 목적으로 나가는 세금 중에서 광역자치단체가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과 목적이나 사용 용도 같은 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 특별회계 같은 부분들은 이것이 약하다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양쪽의 얘기를 들었을 때 다 합리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이렇게 그냥 세금을 올리는 방법 말고…… 기금에 대한 얘기도 지금 지역공헌 발전기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건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이뤄서 순차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뭘지에 대한 것을 찾는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국장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이상 논의를 못 할 정도로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금 얘기가 급박하게 나왔습니다.

기금 방식으로든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야 대안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유형의 기피시설을 유치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사업을 위해서 기금 방식을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기금 활용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부분, 시멘트 업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문제는 기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영 위원**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은 없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래서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정점에 이른 겁니다.

○**이영 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우려가 있냐면 기업이 100원이 남으면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100원이 그냥 다 돈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재투자라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모르는 건, 시멘트 업계 내부 사항을 정확히는 몰라서…… 지금 10년간 평균 순이익을 봤더니 1841억이더라고요. 그런데 탄소중립 다 빼고 그냥 시설세만 집어넣었을 때만 해도 만약에 최대로 부과될 경우에는 4분의 1 정도의 순이익이 줄어요. 이게 저는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이게 엄청나게 치명적인지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래서 그쪽에서 주장한 것이……

○**이영 위원** 그쪽에서 주장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았어요, 언론 쪽에서. 그런데 물론 이게 100% 엄밀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의원님들이 내신 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멘트 업계가 기금으로 조성해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규모가 한 25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기금 방식으로.

○**이영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다면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 말고 대신에 지역 주민들이나 또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세금 방식으로 250억 정도에 상당하는 세금 방식은 어떤가를 저희가 해 봤더니 톤당 500원 정도를 하면 기금 방식으로 하는 방식과 액수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는 방법이 더 안정적이겠다, 이 목적에 맞겠다 이런 결론을 낸 거고요. 또 업계의 어려움 등도 있어서 오늘 논의 과정에서 조금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이 접근과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부터 시작해서 관련 자료부터 나름 본다고 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늘 뭔가 법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실상이랑 너무 괴리감이 커 가지고 울분을 토할 때가 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의가, 육성 법안이나 보호 법안이 아니라 규제로 그냥 전락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까 최춘식 위원님 말은 지역 주민들은 다른 얘기하더라라고도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원한다, 그런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두 개 부처가 조금 더 하셔야

지고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안을, 그러니까 딱 100% 모범답안은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정할 때 100 대 0이 되지는 않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그래도 경제 쪽도 보고 대외적인 공급 위기 상황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생각하지 않았던 탄소중립 환경부담금이 사실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을 법으로 정했을 때는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발언 잠시만 듣고, 이 문제는 여야가 첨예하고 또 서로가 입장이 다 비슷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지만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니까 추후에 또 논의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이명수 위원님 다 듣고 이것은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이명수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도입 시기나 내용이나 방법론에서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지금 행안부하고 산자부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행안부 입장에서 사전에 회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정부 입장을 내야 됩니다. 여기 와서 대답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의원입법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기금이 어디에 귀속되고 있고, 배분하고, 주체가 누구예요? 기금을 업체들이 어디다 내고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위원님, 산업부에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명수 위원 예, 빨리 말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생산성본부라고 기금관리기관을 새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출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이명수 위원 배분은 누가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배

분요, 그것은 지역에서 기금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꾸리면 그다음에 자금을 생산성본부에서 합당하게 지출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 보완 조치를 해 줘야 될 걸요. 여러 가지…… 이게 일종의 기부금처럼 보여지면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불완전한 부분을 어쨌거나 좀 해 줘야 돼요. 기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 관리나 귀속 주체를 이렇게 생산성본부에다가 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임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를 좀 해 줘야 되고.

어쨌거나 환경오염인 만큼 주민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우선순위를, 재원이 없어서 건강관리 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선은 투자 우선순위를 자치단체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목적세로만 내서 이 목적이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없는 것 아니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충북 전·현직 부지사 다 같이 나와 계신데 과연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강원도도 있고 있는데, 현장에서 정말 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거 투자 못 합니까? 이거 안 맞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맞고.

그다음에 배출총량제를 하고 있는데 배출총량제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그건 총량제 조절을 해야지요.

또 하나는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 각종 조세 부담금이 여러 가지로 부처별로 나눠서 이게 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총량적으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이 부처에서 이거 요구하고, 저 부처에서 이거 하고, 환경 뭐, 산자부에서 뭐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를 통해서 조세 또 내라,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군데,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좋은 의미의 부담의 어떤 조정과 통제가 저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언젠가는 이게 아마 조세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이나 시기, 방법은 좀 신중하게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이형석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산업부 국장님.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예.

○이형석 위원 아까 제가 정책자료집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업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업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자료집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그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시멘트 업계의 2020년 영업이익은 자그마치 5047억입니다. 지금 제가 제출한 법안 즉 톤당 500원으로 하면 이 금액 자체가 237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기금 250억 걷는 것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불안정적이고 언제 어떻게 영속성을 가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역자원시설세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산업부가 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게 예측이 된다 이렇게 염려가 되면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고 실시 시기를 한 2년 정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보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시멘트세와 관련해서는 아까 행안부차관님 말씀처럼 워낙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논의가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올해도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간다면 상당 부분 지역에서의 저항이 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산업부도 이제는 입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유예한다는 부분이나.....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 대신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계만을 대변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계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같은 돈인데 기금으로 내기보다는 세금이 차라리 땀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봤고요.

그랬는데 지역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죽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영속성 그리고 사업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역 주민, 지자체에다

가 다 선언한 마당이라서 지금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고 세금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지가 않다. 만약에 세금이 신설된다면 기금은 기금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될 것으로 업계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계가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이 내 주신 절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거둬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환경규제는 배출 허용 기준, 예를 들어서 나스(NOx)면 나스, 삭스(SOx)면 삭스, 어떤 ppm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시설 관련해서 투자도 하고 비용을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그 밑으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이 당연히 배출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역사회공헌기금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재빨리 지역사회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존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외부불경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조업 관련해서 환경규제 세제를 새로이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정책, 환경정책 그리고 재정 당국과 큰 틀에서 역할분담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라서 일단 시멘트부터 자원시설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환경부담금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부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외부불경제 해소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사고의 틀을 좀 바꾸시라고.

○소위원장 박재호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형석 위원 예.

○소위원장 박재호 왜냐하면 이 논의가 서로 여야가 안 맞고 또 입장마다 다 달라서 이것은 신중 검토해서 다음에 할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따로 논의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재호 일단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0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쪽에서 29쪽 사이는 시멘트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이기 때문에 30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신규 과세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원자력 이용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과세하려는 것으로 과세 대상을 방사성폐기물(고준위폐기물, 중·저준위폐기물)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방사성폐기물로 할 것인지 사용후핵연료로 할 것인지 그리고 납세의무자를 원자력발전소로 하여 연구시설을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 이용시설로 하여 연구시설까지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납세지를 시설소재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세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 부분은 워낙 복잡한 문제이고 아직 부처나 이쪽 업계하고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서, 특히 방사성폐기물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55쪽입니다.

중간에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은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석유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 대해서 그 생산량과 반출량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 부분도 시설에 대한 문제여 가지고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65쪽입니다.

65쪽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해서 취급량 킬로그램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역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71쪽입니다.

71쪽은 핵연료에 대해서 신규 과세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전용원자로에 투입되는 핵연료에 대하여 핵연료세를 신설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세율은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설에 관한 부분이어서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80쪽입니다.

80쪽은 물류단지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입·유통하는 자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과세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화물 톤당 3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로 인한 여러 가지 외부불경제 효과나 이런 것은 공감이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도세인데 물류단지 과세를 시군세로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86쪽 사항입니다.

86쪽부터 92쪽까지의 내용은 풍력과 태양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신규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풍력은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3원, 태양에너지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3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이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93쪽입니다.

93쪽은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 신규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세율은 폐기물 매립량 톤당 5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역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마지막으로 100쪽입니다.

100쪽에 해당하는 사항은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톤당 4000원의 세율로 신규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소위자료에 대한 일독은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차관님, 수석전문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결 쟁점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제별로 검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법안심사자료 6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해 주셨던 부분 중에 오늘 논의하신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법안들의 보류되었던, 재논의하고자 하였던 부분들을 지금 모아놓은 사항이므로 빠르게 논의 경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은 지방세기본법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대해서는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특별시세와 구세 귀속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난번 소위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재논의하기로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행안위에서 지속적으로 공론화시켜 주시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일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딱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재논의하시기로 하신 부분들입니다.

먼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의 도입입니다.

소위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필요성 그리고 지금 다른 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제 감치제도의 운영 실태 등을 조금 더 점검하신 후에 재논의하기로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감치제도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좀 범위를 좁혀서 설계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국세 같은 경우도 지금 감치제도가 도입이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과태료도 감치제도가 도입이 돼 있는데 경찰청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지난번 법안심의 때 와서 답변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좀 되지는 않아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 대신 업무량이 많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감치 대상 금액을 상향해서 설정을 한다면 효과적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과태료 감치제도가 있어서 경기도나 부산시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감치 통보만 해도 상습 체납자들은 부담을 갖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자체도 거의 37억, 14억 정도를 지난해에 감치 통보만 해서도 이렇게 과태료를 납부받은 그런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에서도 저는 차관님 말씀처럼 이부분을 좀 상향해서, 대상 금액을 한 5000만 원 정도로 상향해서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5000만 원 정도 하면 대상이 얼마 정도 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3000만 원까지 올렸을 때 한 900여 명 됐고요. 5000만 원 정도 되면 한 400명 정도……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일단 이것을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장님, 경찰청에서와 있으니까 의견 한 번만 더 들어 보시고……

○소위원장 박재호 경찰청 이야기 들어 보면 업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경찰청 이야기해 보세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우철문 위원장님, 저번 회의 때 말씀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 부담이나 인식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래요, 그러면 금액을 그 정도 하면 일선 경찰도 업무 과중을 막고 또 이게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면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시행을 해 보지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에 있는 내용은 지방세 납부 수단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 납부 시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지방세 납부 시에 간편결제에 의한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는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간편결제를 도입할 경우에 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등 결제 수단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백혜련 위원님과 이영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가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 정비되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개선하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의 규모가 자치

단체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주 작은 군단위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의 지방세를 걷는데 너무 다양한 수단을 감당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자체별로는 이미 업계와 계약을 통해서 다양한 수단을 열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디지털 정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개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11쪽부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보류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먼저 11쪽은 지방세 특례의 원칙을 정하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특례 적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세 특례의 원칙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세 특례를 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특례 적용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으로서 3년 이내로 원칙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이명수 위원 감면율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뭐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명수 위원 감면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감면율이 아니고 3년 주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11페이지.

○이명수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례가 너무 많은 것도 고려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특례를 만들 거예요? 특례가 없는 게 제일 잘한 일이고, 3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특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례는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이 이 법의 원칙입니다.

○이명수 위원 방향성은 맞고, 3년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3년이라고 한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3년은 저희가 그동안

에 여러 사례들과 관행 또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특례는 통상 3년 정도면 평가가 가능하고, 데이터 통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는 것도 3년으로 거의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 이렇게 넣는 것은 의미가 좀 작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명수 위원 잘못하면 1년, 2년 할 것을 3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래서 이것은 빠른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 관련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용자를 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안에서는 감면율을 50%에서 25%로 축소를 하면서 2024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는 감면 대상 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명확히 하고 일몰기한을 24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셨으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이어서 가능하면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이 저희 정부의 방향인데요.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차관님, 이 문제는 제가 재논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부에서는 대법원의 2011년도 판결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 논의할 때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그 어려움을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 소위 말하면 설득력이 금년에 떨어지는 부분이 코로나가 결코 작년보다 덜하지 않다, 지

금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그대로 단계적인 감축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하는 데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작년하고 상황이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 어려우시다면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1년 정도 연장을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재논의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내 봅니다.

○이명수 위원 저도 의견을 낼게요.

○소위원장 박재호 이명수 위원님 이야기하시고요.

○이명수 위원 저도 같은 취지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일몰기한 연장 정부안 철회하고 3년 얘기를 했는데 감면을 축소 문제는 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건가, 제일 어렵다고 할 때. 현행 유지로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현행 유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현행 유지하면서 1년 연장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김민철 위원 같은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예, 됐습니다.

○최춘식 위원 1년요?

○소위원장 박재호 50% 하고 1년.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6쪽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감면 연장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6개 법률안에 대해서 지난번 소위에서는 건설임대 감면 요건을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0일 이내로 완화하고, 수도권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기준가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며, 단기 임대 등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정비 조항을 넣었고,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지방공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감면 대상을 주택 및 건축물로 확대하며, 임대유기기간 내의 매각·중여 시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쟁점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 사업에서 취득세 감면율을 정부안에서는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실 것인지 현행을 유지하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종합적인 검토로 LH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야기하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주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명수 위원 LH가 흑자 내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LH를 두둔할 생각은 없는데 이게 여기서 감면이 축소되면 결국은 그만큼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제 의견은 현행대로 유지를, 감면율을 유지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LH만 볼 일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H가 작년 순이익이 3.3조인데 현재 올해까지 매년 감면받는 게 3000억입니다, LH가 받는 감면이. 그다음에 내년부터 추가되는 게 연 1600억 원입니다. 그러면 LH는 내년부터 4600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는데 전체 지방세 총 감면액이 개인지방소득세 빼고 나면 4조입니다. 그러면 한 기관에 대해서 12%의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작은 단위 사업에 몇십억 조금 더 감면해 주자 논의보다는 LH가 이미 큰 덩어리에서 큰 사업들의 감면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정부안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전체 지방세 감면 중에 이게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정부안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이명수 위원 저는 소수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LH만으로 끝나는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만약에 특정한 지자체 내에서 LH와 같이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꼭 필요하거나 LH를 유치해야 될

입장이면 조례로도 또 일부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열려 있기 때문에 법안에서는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명수 위원 저는 현행 유지예요, 현행 유지.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어제는 이걸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소위에서 의견을 정리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어제 정리는 안 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LH가 상당한 수익을 내는 부분은 지방에서 사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LH는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국세와 배당으로 국가기관에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 입장에서의 감면은 적절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위원 감면액이 55억이라고요? 연간입니까, 아니면 추계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연간입니다.

○김형동 위원 연간 55억 정도, 현재 감면액이 109억에서 55억으로 감소할 것이라라는 게 추계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이든 다액이든 이렇게 감면액이 줄어들었을 때 그 부담이 영세한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여지는 없습니까, 그런 우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취약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LH와 꼭 어떤 일을, 주택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 유인을 주기 위해서 조례로 더 감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전체를 정하는 것보다는 현행 유지하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38쪽입니다.

38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이 부분 역시 정부안은 감면을 취득세의 25%, 재산세의 25%로 축소하면서 일몰기한을 24

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하셨으나 감면 내용을 축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앞의 안과 동일한 의견으로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가장 민감한 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건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결국 저는 현행 유지해 놓고 그다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또 이렇게 그분들한테 일부라도, 소액이라도 결국 부담이 증가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또 다른 분 의견……

정부 측 입장 이야기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잘 아시는 것처럼 LH가 연간 한 3조 3000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지방세 이거를 현행 유지한다는 것은 명분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감면액 중에 LH가 한 5000억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이것은 지방세 특례를 제한하는 법 취지상 좀 과하다는 판단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어 놓겠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LH가 수익을 많이 내서 세금을 더 과세하겠다는 것하고 아까 얘기한 그 이야기하고는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저는 일몰기한 연장은 동의하고 현행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다시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또 다른 의견……

○김민철 위원 LH가 취득세·재산세 이것을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이렇게 적용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충분한 수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LH가 경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하면서 지자체와 협

조를 잘하면 이 부분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봅니다.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충분히 논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말씀 듣고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LH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대해서 약간 개념이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수익을 많이 내는 부분 그리고 담세 능력, 담세 능력 자꾸 얘기하시는 데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게끔 이것도 정부가 일종의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단순한 논리인데 1700억…… 감면 규모를 점점 이렇게 줄이거나 거꾸로 얘기하면 LH가 경영상 부담을 세금 때문에 더 지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임차인들뿐만 아니라 또 그 기반 조성해서 택지든 다른 부지든 분양받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도 LH와 연관되신 분들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꼴인 것이지요. 이게 일정 정도 LH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공기업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어떤 사적 영역으로 자꾸 밀어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LH를 차제에 성격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봄에 LH 사태 있을 때 LH 임직원들을 사실상 거의 준공무원 취급해서 모든 재산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흔히 말해서 잘 경영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런 얘기는 공기업이나 공적 영역에서 쉽게 나오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물론 세금을 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확하게 세우시려면 공기업이 제세금과 관련된 부담을 기업이나 그 어떤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줄여드리는 방향으로 정책 입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정부 측 답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공기업의 성격이나 LH의 성격과 세제의 문제를 직결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공기업도 세금은 다 내는 거고요. 저희는 조세는 개세주의이기 때문에 다 열려 있고요.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랑 특정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

로 감면해 주는 것이 지방세의 취지에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의견은 있지만 어쨌든 정부 측에서 지방 쪽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니까 그런 것 좀 열어 놓는 뜻에서, 지금 이것을 또다시 논쟁해 본들 이야기는 똑같은 것 같아서 정부 측 의견대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하여튼 저는 소수 의견으로 얘기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재호 예, 소수 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0쪽입니다.

5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복잡한데 어제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감면율은 취득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의 취득세 100%, 1억 5000만 원 초과는 50%인 현행을 유지하고 생애최초 주택 판단 기준을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며 감면이 제한되는 연령 기준을 미성년자로 하향 조정하고 추정 사유를 보완하며 일몰기한은 2023년까지 연장하시는 데까지는 논의를 하셨고.

추가로 남아 있는 쟁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대상이 되는 기준가액을 현행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에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4억 원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로서 현행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인 것을 부부 합산 9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실 것인지 그리고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여러 가지…… 이게 종합적인 사안이어서 저희가 관계 부처랑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이영 위원님.

○이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부 측에 대한 것보다…… 여당 위원

님들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여당 위원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것 기재부가 사실 끝까지 반대 의견을 좀 냈었는데요. 그때 여야 위원님들 합의로 이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주택가액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취득세 감면을 인상하는 부분은 사실 인상이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한 것에 따르면 아마 예전에 있던 주택가의 적정선도 못 맞추는 인상물이거든요. 그런데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힘들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정부안을 받아들이실 건지.

○소위원장 박재호 이 안은 여야가 토론을 해서 정부 측 의견하고 같이 만드는 건데 여당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셔서 이 토론이 되지를 않겠네요.

○이영 위원 사실 지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올렸을 때처럼 여야가 합의로 관철시키지 못하면 이것은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야가 논의를 한 결정에……

○소위원장 박재호 우리가 이 이야기는 오늘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소위에서는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논쟁을 할 수도 있지요, 굳이 소위에서 꼭 여야가 의견을 다 맞춰서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정부 측 입장이 아마 국토부 입장하고 다 의논을 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점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냥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지역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부산이니까 부산 지역을 생각하면 사실 저는 양도세 12억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속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길어지면 이쪽에서…… 우리가 국토 관련, 세금 관련 또 주택 관련해서 다 하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오늘 정부 측 의견대로 좀 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거론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 위원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4억 원에 대한 인상을 요청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다 검토했을 때, 위원장님 부산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서울 부산 세종, 주요 도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상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던 건데요.

○소위원장 박재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또 더 많은 토론을 위해서 상임위에 올리면 좋다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 내용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아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줘야 된다는 이유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차관께서는 세수를 놓고 다른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에 기거하는,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나 자료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국토부하고 지자체에서 확인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김형동 위원 몇 분 정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피스텔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고요. 또 이게 오피스텔을 열고 닫고 가……

○김형동 위원 차관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피스텔은 그야말로 오피스 개념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그런데 오죽했으면 생애최초…… 청년들이 오피스텔에 신혼집을 구입할까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됐고요.

○김형동 위원 그런데 여기 글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오피스텔 문제는 그 부분을 열어 주느냐 닫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풍선 효과가……

○김형동 위원 그 뒤엎 것은 분명히 제가 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세금 가지고만

말씀하시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 여쭙본 거고 특히 청년들이 신혼 첫 살림을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 제공자가 정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은……

○김형동 위원 청년들이 집도 못 구해 가지고 오피스텔 들어갔는데 세금까지 더 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최근의 정부 정책이나 또 여당 후보 또 야당 가릴 것 없이 차기에 집권을 하겠다는 분들이 신혼 주택 또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사실상 장기 저리, 무상으로라도 주거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때는 그러면 반대하실 겁니까, 세수가 안 잡히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제가 세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와 또 관련된 부서와도 검토를 했고요. 이것은 종합적인 주택정책과 관련……

○김형동 위원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재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논쟁할 것은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다 자식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면해 주고 안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의 단편적인 면만 가지고 이것을 감면해 준다고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과연 세수하고 관계없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도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회의에 올리는 걸로 하고, 오늘 이것은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의논하는 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60쪽입니다.

60쪽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방세 감면으로서 개정안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대행 의뢰·수임 받은 재산의 매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 의뢰받거나 수임받은 재산의 매입 시 취득세 면제를 3년 연장

하는 내용은 어제 합의를 하셨는데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할 때 그리고 중소기업이 다시 취득할 때에 대한 감면 내용, 그러니까 감면율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 부분에서 아주 어려우신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영 위원 일단은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가지고 중소기업이 다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100% 수용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면, 지금 자산관리공사의 취득세 감면은 그냥 유지하시는 것으로 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그런데 그때 건의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은 사실은 매각한 쪽에서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보통 본인들이 내야 되는 취득세를 임대료에 녹여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은 어려워 가지고 지금 피눈물 나게 자산 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한 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시키는 부분만 좀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캠프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기재부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의 설립과 운영 목적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캠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이 다시 매입했을 때는 감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 위원 취득세가 50% 되면 캠프는 그것을 자꾸 예산에, 이렇게 버짓(budget)으로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할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캠프는 사업 영역이 워낙 다양해서요……

○이영 위원 다양한데 저희가 보통……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것은 작기 때문에, 모수가.

○이영 위원 예산을 보통 세울 때는 그런 식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라 마이너스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에 대한 예산을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공적기관이다 보니까 어차피 수익 사업을 100% 원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다른 데서 메우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정을 제도권 안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기재부하고 캠프에 전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정부가 공기업에 수익 난다고 자꾸 세금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 논리는 안 맞아요. 수익구조 전체하고 취득세나 이런 것 감면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차원인데 이것을 자꾸 ‘흑자가 나니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국민하고 직접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의견은 이영 의원안의 감면비율은 지지를 하고 지난번에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했으니깐 기한은 그렇게 일단 설정을 해 두는 게 필요하다고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수정안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캠프 감면이 23년까지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한꺼번에 23년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예, 그거는 23년으로 하고.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숫자를 다시 한번, 20년 감면 규모가 24억이라는 말입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243억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24.3억입니다. 이게 대상되는 업체 자체가 한 50여 개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김형동 위원 거의 따져 보면 2020년 당기순이익이 550억인데 24억이 다 저거되지는 않겠지만 수익 중에 상당한 부분 이게 또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캠코가 BIFC에 세 들어 살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경영이 위축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캠코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국유재산 관리를 주로 합니다.

○**김형동 위원** 제가 회사 성격이나 내용은 너무 잘 하는데 그래도 공기업이기도 하고 또 지역을 떠나서, 여기 서울에 있다가 부산까지 내려가 가지고 세 들어 사는데 24억이면 상당한 금액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운영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진짜 담세 능력이 충분한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물어 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하는 재정공제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캠코는 경영 상태가, 워낙 규모도 크고 이 정도 담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사항입니다. 64쪽입니다.

64쪽은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로서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상향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그리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지난번 소위에서는 현행 감면율로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는 하셨는데 남아 있는 쟁점은 대형항공사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을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대형항공사의 경우에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 위원님.

○**김형동 위원** 원안대로 됐다면.

○**이영 위원** 아니요, 제가 원래 냈던 원안은 취득세를 2.0%로 상향해 주고 재산세를 사실은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해외의 사례처럼 100%를 애

기를 드렸거든요, 질문이.

국토부 입장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는 코로나 피해 상황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취득세 2% 추가 감면하는 안과 재산세 100% 감면해야 된다는 안에 동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저희는 재산세 감면을 말씀드렸고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취득한 건데 그 취득한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과 잘 맞지 않고 그래서 분명하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워낙 항공업계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2년간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 위원** 그런데 국토부 입장을 알고는 계셨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국토부는 18년도에 저희가 대형항공사에 대해서 감면 배제할 때도, 거의 산자부와 같은 논리입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정부 제출안으로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가 이견이 없었기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까지 와 있습니다.

○**이영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지금 이렇게 되면 대형항공사는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가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는 거잖아요. 원래 취지가 해외 사례까지 다 비교해서 항공업계가 코로나로 엄청난 타격이 있으니 제가 주장을 하다 하다 마지막에 ‘그럼 한시적인 안이라도 고민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저가항공사에 대한 100%를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일몰기한 법이 보통 3년 주기잖아요. 그래서 2년이 아닌 한시적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3년으로 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차관님, 이것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체로? 선진국의 경

우에, 대형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항공업계 상황은 나라마다 다 다르고요. 큰 나라도 있고 저희는 항공업계 경쟁률이 ICAO에 따르면 7위까지 올라가 있고요. 미국은 주별로도 다르고 일본은 중량 기준으로 하고 또 일부는 거의 지원을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확실적으로 정리하기는……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대체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대체로 표준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소유의 경우가 있고 리스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달라야 되지 않나요? 직접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리스로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를 항공사에서 사는 경우가 직접 구입, 그다음에 금융리스, 운용리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금융리스는 할부로 내다가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받는 것이고 운용리스는 그냥 임차하는 것이고……

○**이명수 위원** 적용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니까 운용리스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명수 위원** 아니, 재산세.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재산세는 부과가 되는데 LCC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운용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거를.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구분해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아까 이영 위원님이 말씀한 저가항공사의 어려운 문제 또 이게 기왕에 3년 정도, 지금 항공업계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재벌도 속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래서 항공업계 지원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기간산업안정자금에서도 이미 몇조 원대로 들어가 있고요. 저가항공사에도 긴급융자 지원이라든가 고용유지지

원금,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엄청난 지원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대형항공사 부분이 워낙 타격이 크다 하니까 이 부분 2년 연장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또 하고……

○**소위원장 박재호** 이것은 2년 하고 그다음에 2년 후에 또 만약에 코로나가 유예되면 좀 더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영 위원** 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예, 한마디 하세요.

○**이영 위원** 이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날 제가 발표할 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미국이랑 일본을 제외하고 주요 십몇 개국을 다 조사했는데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일본도, 미국 같은 경우도 주 단위로 다른데 60%의 주는 재산세를 안 내고 있고 30% 정도가 차등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항공사가 대형항공사의 타격이 더 크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가항공사의 타격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사실은 면밀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막연히 대형항공사가 더 타격을 입었으니 대형항공사는 추가를 하고 저가항공사는 기준을 유지하고, 이것도 사실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지금 항공사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 중에서 저희는 특례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항공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여기서 다 이 특례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아까 비슷한 기조로, 조세 징수 관련해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결합이지요. 기업결합 관련해서 사실상 승인하고 다른 외국의 승인만 남은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얘기인데 한 5년 전에 한진해운을 어쨌든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서 살리기보다는 버렸거든요. 지금도 이것은 LCC가 됐든 큰 항공사가 됐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간이 비록 운영하지만 기간산업망이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금 얼마 더 냈다 덜 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정부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른 돈 많은 아랍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의 항공시장을 굉장히 높이 사고 그리고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항공사를 밀어내고 로비를 해서라도 자기들이 취향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수년간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세금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세금 플러스 그 이상의 산업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최춘식 위원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예, 말씀하십시오.

○최춘식 위원 궁금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또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저거한테.

차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항로도 많이 축소가 돼 있고 폐지되고 또 직원들도 많이 휴직 상태에 있고 또 자산도 매각 중에 있는데 어려운 그런 입장을 놓고 본다면 현재 우리가 가져가야 될 세제에 대해서 당분간 유예 조건을 갖춰 가지고 잘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사태하고 연관돼 가지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항공계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국토부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저가항공사 긴급융자 또 공공부문 항공권 선구매, 고용유지지원금,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김형동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좀 엄격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미국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거는 이대로 통과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안부가 어떤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감면, 감세 이거는 아주 작은 금액이고요.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다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더 도와주면 좋겠

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고요.

또 행안부차관님이 전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한 분야가 있으면 너무 크게 그것을 하셔서 우리가 좀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명수 위원 정부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에요?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가 지금 양보를 좀 했으니까……

○이형석 위원 대형항공사 포함해서……

○소위원장 박재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해도 원래는 이게 조금은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전체회의에 올라갔을 때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12시가 되었거든요. 오늘 본회의가 저녁 8시부터 합니다. 국민의힘은 아마 2시에 의총이 있을 거고 우리는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반에 속개를 해서 이걸 마저 정리하면서,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하는 행안위 1소위지만 마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3시간 반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심사 의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형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재호 예.

○이형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쟁점되는 것들을 좀 새로 검토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대한적십자사하고 대학병원들이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특례제한제도에 대해 재검토를 오후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그것도 한번 넣어 가지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죄송한데요. 방금 논의했던 것, 그래서 우리 소위의 의견이 뭔지 헛갈려 가지고……

○소위원장 박재호 조금 전에 정부 측에서 이야기했던 재산세 감면해 주고, 대형항공사, 그다음에 2년 동안 유예……

○김형동 위원 대형항공사도 들어간다.

○소위원장 박재호 대형항공사도 들어가고,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감면율도 동일하다, 아니면……

○소위원장 박재호 감면율도 동일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그래서 2년 동안 해 주는 것으로……

법안소위를 오후 3시 반에 속개하여 심사와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했다가 오후 3시 반에 속개하여 지방세법 심사와 의결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제별로 검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67쪽입니다.

67쪽은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내용입니다.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합의하셨는데 정부안에서 현행 50만 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을 65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5만 원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보다 더 상향 조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좀 상향하는 것으로 논의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법안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광주형 일자리 노사상생 모델 1호지요, 1호. 캐스퍼 출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즉 경형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1875만 원 이하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를 해 주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위원님 말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래서 이게 정부 측 의견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75만 원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리고 일몰기한 3년 연장……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70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반환공여구역 등에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일몰기한을 25년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례를 신설하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었으나 또 일부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를 해 주시면 일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지금 김민철 의원님 법안,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 거기에 대해서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그거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박재호 70페이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까지 이야기했고.

○김민철 위원 여기에는 공여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관님. 그런데 그것을 반환공여구역으로 하면 지역의 범위는 북부지역으로 많이 올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해서 좀 해 주시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래서 지금 세 구역이 있는데 정책이 의도하는 바를 구현하려니까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만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그것을 구분해서 정책을 하려니까 저희가 좀 시행 준비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두 지역으로 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저희가 사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뒤로 1년을 더 늘려 주셔야 돼요, 1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같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1년 유예해서 3년 원칙을 적용하면 25년까지 일몰기한을 두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일단 3년 가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72쪽입니다.

산업단지 등 취득 부동산의 추정 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정부 제출안에서 산업용 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 등 혼재된 용어를 산업용 건축물로 용어를 통일하는 부분은 추정 배제의 명확화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합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남은 부분이 3년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5년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범수 의원안은 그냥 5년으로 표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5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김민철 의원안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취득한 경우에는 5년간 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그 조항을 두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 부분은 일반적인 추정 규정이 1년인데 비해서 산업단지 지역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3년으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신중 검토 의견으로 해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김민철 위원** 지금 이 앞에 우리가 다른 법안을 통과하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공사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조금씩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땅을 취득해서 3년 안에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추정을 하게 되면 재기하기가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코로나 기간 2년, 2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한해서는 다시 빨리 그 안에 착공을 하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는 2년 정도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도 김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이고 특히 정상적인 경제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됐으면 이것을 늦출 기업들은 산단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된 산단 입주를 하려고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의견 한번 말씀해 주는데 저도 입장은 김민철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세수가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그제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정부 측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봤거든요. 들어 봤는데, 위원님들의 코로나 때문에 지연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을 했으면 빨리 추진해야 되는 긴박함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산업단지 분양을 받은 업체의 여러 가지 사정 속에는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은 통상적인 추정 요건보다, 3년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3년 하시고요. 또 상황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은 더 잘 알고 있는 건데……

○**이형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상황을 잘 알고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입주 기업이 100개면 모두가 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입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야 될 행위들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차관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지요. 대다수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경제적인 불황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2년간, 코로나 기간 2년은 전체적으로 유예를 해 주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는 기업이 있지요. 여건이 뭘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주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차관님께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안부가.

○**김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어려워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데다 추정까지 하면 더 어려워져서 아예 재기를 못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중소기업이요, 대기업도 아니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런 기업체

를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기업체마다 개별 사정을 다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추정 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넓히면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또 지방 산단에 대해서 분양받으신 업체들이 또 다른 이면도 있어서 저희 정부안이 좋겠다라는 지자체의 의견이 대다수고 어느 한 지자체도 이것을 5년으로 해 달라고 한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합시다.

○김민철 위원 한 가지만요.

이런 거예요. 3년 안에 하겠다고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른 못하고 그 사람들이 모두 3년 안에 끝내면 그것을 다시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든가 지자체 생각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민철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자체의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께서서는 구체적인 개별 기업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분양을 받은 업체들이 다른 또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서……

○김민철 위원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것을 확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5년으로 한다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산단마다 굉장히 좋은 곳도 있기 때문에……

○이형석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2년 유예한다고 그래서 지자체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지자체는 입주를 빨리 촉진시키려는 것이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래서 그런 압박 수단으로 3년이기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년 좀 유예를 준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지자체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차관님, 산단에 지을 수 있는 게 산업용, 공장용 말고 주거용도 들어가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여러 형태가 들어갑니다.

○이명수 위원 지금 산단은 전하고 달라요. 많

이 복합적인, 콤플렉스로 들어가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도 있고 그 시설 안에 딱 제조업 것만 아니기 때문에……

○이명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거용이나 이런 데서 감면해 주는 것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가 또 공장 허가 후에 몇 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지금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뒤에……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애초 분양 요건에 맞지 않으면, 애초 분양 조건에 명시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명수 위원 글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산업단지 분양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 있고요. 그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분양 조건에 맞춰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명료히 있는 건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추징 요건을 5년으로 완화시켜 준다는 것은 저희 정책적 상황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수 위원 이걸 생각해야 해요. 지금 우리 산단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적게 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여건을 개선해 내야 되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건 뭐를 위해서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와 필요성을 감안해서 해야지 이 세법만 가지고 ‘이 세법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해외에 나가서, 토지를 그냥 거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데로 나가고 그런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한다 해도 정부 입장에서 어쨌거나 이런 투자가 안 되고 또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보다는 좀 더 쉼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도 그런 기존의 관점만 가지고 보지 말아 달라 그 얘기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이것 갖고 논쟁을 더 할 것은 없고 국토부가 산단 관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지방자치단체가 또 산단 관리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지자체 입장을 한번 누구를 시키든지 빨리 알아보고 그리고 방법은 이렇게 되는 곳도 있고 또 안 되는 곳도 있고 다

양한 사례가 있어서 산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여쭙보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하고 나서 이 안을 다 마치면, 이것 끝내고 나서 조금 쉬다가 남아 있는 쟁점 한 두세 개를 다시 할 거거든요. 그동안에 김민철 의원님 안에 서로가 충분히 의견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넘어갑시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78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100%를 감면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 안을 채택하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14년도에 감면을 폐지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재신설할 상황이 일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어떻게, 몇 % 정도……

○백혜련 위원 아니, 저는 이것 반대인데요.

○소위원장 박재호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저는 이것 2014년도에 일몰해서 했는데 굳이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만 이런 감면 조치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새마을중앙회나 바르게살기도 거의 똑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없는데 한국자유총연맹만 이렇게 감면하게 되면 또다시 다른 법인들도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특별히 감면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새마을중앙회는 계속해서 감면을 해 오고 있었고요, 바르게살기운동은 자산 자체가 없습니다. 회비로 운영하는 국민운동단체여서 바르게살기운동은 비교가 좀 어렵고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속적으로 감면을 해 왔습니다.

○백혜련 위원 했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유총연맹은 자기들 자산이 있고 자기들 수입이 있다 해서 감면을 취소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해서 감면을 조금 더 해 주라 이런 것 같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지금 실제 자유총연맹의 운영이 어려운 점도 많이 고려되고 자유총연맹이 처음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죽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는데 과연 여기에…… 수행 사업이 다소 달라진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왔던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자유총연맹이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면율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감면 대상에 넣어서 이런 활동을 오히려 고무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서 김영배 의원안이 100% 그다음에 일몰기한을 2022년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조정을 해서라도 감면 대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백혜련 위원 100% 감면이요? 저는 이렇게 100%까지 해야 되는지 별로 수궁이 안 되는데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정부, 한 몇 % 정도…… 여기가 세수가 얼마쯤 돼요? 감면을 이렇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으로는 주차장 사업과 컨벤션 사업이 주 사업인데 주차장 사업이나 컨벤션이나 거의 최악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또 100% 감면하기는 어려워서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한 3년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 정도 하지요.

○백혜련 위원 그런데 김영배 의원안은 일몰기한이 이천이십……

○이명수 위원 저는 동의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죄송합니다.

○백혜련 위원 김영배 의원안은 오히려 그냥 1년 연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해서 3년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통상 3년은 아니까요. 감면을 열면 3년입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 그게 법안 제안한 것보다도 더 엄청난 특혜를 정부 측에서 주는 그런 법안이 되는 건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김영배 의원님은 취득세·재산세 100%를 얘기하셨고요. 저희는 그것의

50% 그리고 일몰을 3년, 통상 하는 것이 3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논의의 범위를……

○**백혜련 위원** 저는 그렇다면 차라리 김영배 의원님 안대로 그냥 100%를 하고 1년 연장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특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차관님이 의원안보다도 2년이나 더 연장해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는 그냥 안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소위원장 박재호** 김영배 의원안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우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 감면을 지금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00% 감면에 3년씩 일몰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면 같은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아니, 이게 지금 김영배 의원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년 하고 또……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상황 변화를 보실 거면……

○**소위원장 박재호**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지요, 100% 해 주고.

○**이명수 위원** 이게 1년인데 1년마다 또 계속 법을 바꾸고……

○**소위원장 박재호** 아니아니, 1년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충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2014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김영배 의원안대로 가는 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장님, 그러면 자충이 위치한 곳이 도시지역 내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산 그쪽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재산세 중에 도시지역분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감면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1년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김영배 의원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이명수 위원** 정확히 해서 다시 얘기해 보세

요, 그 감면 내용을.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재산세를 통상 감면할 때 그 재산이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으면 도시계획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산세에 따라붙는 도시지역분 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큰 건물의 경우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내야 되는 목적세가 있어서 그 목적세 부분은 항상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료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김영배 의원님 안에는 취득세·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포함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소위원장 박재호** 맨 끝의 그것은 빼고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100% 하고 그리고 2022년까지 1년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전공대학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몇 페이지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81쪽입니다.

81쪽 부분에서 지난번 회의에서는 환지계획 취득부동산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셨고, 마을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유지하는 것으로까지 논의하셨는데 남은 쟁점은 전공대학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 안은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전공대학을 정확히 아세요? 전공대학?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압니다.

○**이명수 위원** 전문대하고 사실 같아요. 설립 배경이나 이런 것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공대학하고 전문대학이 따로 있는 이유를 알기는 하는데 사실상 같은 대학인데 어느 대학에는 이렇게 하고 어떤 대학에는 이렇게…… 전문대학에 준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방세 가지고 차별해야 될 특별한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위를 준다는 점에서는 전문대학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단 근거 법률 자체가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르고 그다음에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평생교육시설하고 동일한 그룹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런 법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전문대학하고 내용상은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근거법이 다르다는 건데 고등교육법상 설립해서 운영하는 대학하고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는 것하고 여기 지방세에서 차별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이게 전부터 아마 여러 차례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 대학이거든요, 대학. 요즘 대학도 어려운데 결국 대학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공대학 감면 대상이 되는 대학이 특정되어 있고요, 특정 대학이고요. 이 대학들이 지금 모조리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고요.

특히 최소납부제라고 하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세제는 개세주의이기 때문에 최소 납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을 특정되는 대학, 특히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많은 주변의 다른 대학들의 시선도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감면을 논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명수 위원** 대학은 대학이라니까요. 대학을 봐야지. 이게 서울에 있고 뭐 어디에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서 세법에서 이것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실질적인 필요성은 없어요. 대학이지.

○**소위원장 박재호** 이것 자료를 보니까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 이렇게 세 군데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전부 다 서울 서초구·중구·강남구에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전문대학이 이렇게 서울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비수도권 대학들이 이런 형태의 방법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비판과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리고 이게 최소납부 15%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차관님께서서는 어쨌든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도시에 다들 또 별도의 대학을, 전공대학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명수 위원** 그러면 서울 시내에 있는 전문대학은 일단 말하자면 면제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명수 위원** 그런데 서울 시내에 있는 전문대학은 안 내고 전공대학은 내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위원님, 이 대학들이 출발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시설을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출발을 전문대학으로 했던 대학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고요.

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대학들은 수업료도 일반 전문대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운영 체계 자체가 일반 전문대학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례를 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명수 위원** 글썄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명수 위원님, 이것은 좀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이것에 특례를 주면…… 행안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시니까 이것은 행안부 안대로 가지요?

○**이명수 위원** 예.

○**소위원장 박재호** 넘어가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소수 의견으로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재호** 소수 의견을 남겨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85쪽입니다.

85쪽은 별장을 감면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께서 별장에 대한 부분을 삭제할 거냐 아니면 다르게 개념 정리를 해서 존치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되는 부처와 좀 더 논의해서 현 상황에 맞는 규정이 가능할지 아니면 삭제하는 게 바람직할지를 좀 더 논의한 후에 내년 중에라도 다시 한번 개정안을 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별장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국토부하고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87쪽입니다.

87쪽은 조금 전에 85쪽에서 보신 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에서 취득세·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별장을 제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것은 앞엿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92쪽입니다.

92쪽은 레저세의 온라인분에 대해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온라인 발매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 납세지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온라인 발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입니다.

○김민철 위원 온라인분에 이렇게 들어가면 앞으로 장외발매소는 이제 안 만든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게 경륜과 경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시 판매되는 겁니다.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지를 전 지자체로 열어 주는 겁니다.

○김민철 위원 그리고 장외발매소는 이제 더 만

들지 않는다는 거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것은 없고요. 장외발매소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레저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95쪽입니다.

95쪽 부분은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레저세의 장외발매소분 안분 비율을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으로 올리면서 장외발매소 매출을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에 50 대 50으로 배분했던 것을 20대 80으로 배분하는 지방세법의 내용과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에 대하여 징수한 레저세의 30% 또는 70% 또는 65%를 제외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는 안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게 시도 간의 배분의 문제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배분된 시도 내에서의 광역과 기초 간의 배분율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논의해 주시면……

○소위원장 박재호 의원님들이 내놓은 법안보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떤지 여쭙보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현행 장외발매소 광역이 50% 가져가는 것 중에 광역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고 나머지를 광역이 가져가는 방법인데요. 서영교 의원님 안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가 70%를 가져가고 광역이 30%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광역과 기초 간에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70%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민철 위원 5대 5로 하면 어때요, 50 대 50?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의견도 저희가 광역을 통해서 들어 봤는데 이게 처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김민철 위원 지금 본장이 50 시도에 50인데, 그중에 50에서…… 그것을 100으로 본다면 거기에서 장외발매소 설치돼 있는 데 50을 하고 50을 광역지자체에 주는 방법……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그 부분이 처

음 이것을 개편하는데 50대 50이면 너무 광역에 많은 세액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광역의 의견입니다.

○**김민철 위원** 지금까지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5 대 5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장이 50 가져가고 그 50에 광역이 있으면 그중에 50이 장외발매소가 있는 데 50을 하고 그리고 50을 광역이 가져가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위원님, 이게 좀 복잡한 말씀이기는 한데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곳이 50을 가져가게 되면 순수하게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의 재원이 느는 거면 좋은데요, 사실은 또 교부세 산정하는 방법이나 광역에서 기초로 조정교부금을 또 내리는 방법이 있을 때 그것을 복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50을 가져가는 기초지자체 세원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나 다른……

○**김민철 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고, 그것은 차후……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철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그 고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크게 보면 장외발매소에서 100을 만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장이 있는 곳이 50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도 본청이라고 하는 곳이 50을 다 가져가는 구조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안은…… 하여튼 그중에서 장외발매소가 있는 본청이 가져가던 50을 지금은 본청이 다 50 먹는데 그중에 얼마를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구에 줄 것이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말씀 중에…… 그러면 50 대 50 이렇게 처음이라 그러면 50에서 25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25를 하시지요. 25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금 저희가 그 문제를 두고 자치단체들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김민철 위원** 아니, 당연히 없는 데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있는 지역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그러니까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들……

○**김민철 위원** 있는 지역에서 안 받겠다 그래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그러니까 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우선배분 비율이…… 자치단체 의견으로는 손해를, 그러니까 어쨌든 세수가 줄어드는 시도 본청의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일단 시작을 한 15% 정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청들의 입장인데……

○**김민철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있는 지자체 의견은 들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다 들었습니다.

○**김민철 위원** 거기서는 뭐라 그래요? 다 달라 그러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구의 입장에서도 어떤 입장이나 하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굳이 어떻게 보면 시도 본청하고 막 이렇게, 이게 재원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제로섬 게임인데 갈등을 겪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일정 비율 이상을 원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먼저 시작하니까 최소 4분의 1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분의 1이라 해도 12.5%밖에 안 돼요, 원 저기에서는.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혼자 행안부하고 딜(deal)하는 게 아닙니다. 의견을 내셨고 정부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저희가 관련되는 광역 의견도, 기초야 뭐 100% 다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광역 의견을 죽 들어 보면 15%까지는 수용해 보겠다, 그것도 행안부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고 개정 필요성이 있다라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15%까지는 나왔고요. 또 반대하는 광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부분이니까 15% 선에서 시작을 하고요. 또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온라인으로 가는 추세로 되면 사실상 이 문제가 얼마나, 몇 년이나 존속할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그

정도 해 주시고요.

서영교 위원장님 말씀이 거기의 외부불경제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또 플러스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일방으로 100% 가져갈 수 있다는 주장도 그렇게 100% 타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렇게 하지요. 지금 현재 처음 시작인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나 세수가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줄어들지도 모르고 또 이게 조정교부금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받는 지자체는 교부금이 줄어들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그래서 얼마나 큰 실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도에서 또는 큰 시에서, 특별시에서는 그만큼 또 줄여서 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현재는 한 15% 정도 의견이 나왔다 하니까 김민철 위원님, 한 15%로 정리를 해서 한번 시작을 해 보지요.

○백혜련 위원 예.

○김민철 위원 20%.

○소위원장 박재호 20%?

○백혜련 위원 아니, 15……

○김민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15%라도 원래 저기 하면 7.5예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렇지요.

○김민철 위원 그래서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니까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한 20% 정도?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그 정도로 시작을……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저희가 몇 년간 더 운영을 해 보고 구체적으로 이익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로.

○소위원장 박재호 20%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법안 내신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셔서 이것은 수석전문위원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더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예.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04쪽입니다.

정부 제출안으로 주민세 개인분 세율의 읍면동 차등 부과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주민세

개인분을 1만 원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세율 변경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읍면동 간 불균형 문제 그리고 주민자치사업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길은 열어 주는 게 옳다고 봐서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지난번 이 안전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세 개인분을 차등해서 읍면동이 세수를 확보하게 되면 동마다 약간의 차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주민들 자기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자기들의 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적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치분권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원하면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가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치에 맡겨 놓고, 만약에 그랬을 때 과연 자치가 유리하냐 자기들이 따질 문제인 것 같은데 김민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김민철 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다면 이것이 행정적 낭비 같은 것은 없겠어요, 읍면동별로 이렇게 다 나누어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바로 완공되고요, 지금도 고도화된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그램상의 문제이고 행정상의 다른 비용이 더 들지는 않습니다.

○김민철 위원 차세대 그것은 2년 연장이 됐잖아요, 차세대 프로그램?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전에도 지금 시스템을 수정하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비용이 더 들지는 않습니다.

○김민철 위원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06쪽입니다.

106쪽은 담보신탁을 통해서 산업단지 조성 개발 사업을 시행한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영세한 민간 산업단지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 안에 대해서 재논의하기로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제도와 특례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신중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꾸 이것이 서로 중언부언되는데요, 애당초 영세 산단에 대한 담보신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면 저는 행안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전에 법률안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됐다고 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법률적 불비, 미비 이런 것 때문에, 대법원 판례 때문에 산단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 자치단체와 기업 간의 갈등만 나타나게 되고 어쨌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과 기업의 갈등을 해소해 주려는 입장에 서 줘야지 법률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 버리면 저는 그것은 유연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애로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이것 괜히 소송 붙여서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가 큰 틀에서 좀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이명수 위원 저도 이형석 위원에 동의를 하는데 법리상 소급 적용이나 여러 가지 논란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영세한 민간 산업단지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법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말씀하세요.

○김민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차관님, 지금 이 건에서는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업체가 특정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서……

○김민철 위원 몇 개 업체나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10개 업체가 되고요.

○김민철 위원 10개 업체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민철 위원 금액은 얼마나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사실상 지방세는 26억이고 다른 것은 국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10개 업체 재산세 26억 때문에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저희한테 있고요.

그리고 특례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특정기간을 정해서 단기간에 운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14년부터 20년까지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운영됐던 것을 다시 돌려서 소급 입법으로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례제도의 큰 원칙에 적절치 않고 만약에 또 이런 사태,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마다 소급하는 특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세정 업무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만약에 10개 업체를 소급 적용을 할 경우 그동안에 났던 72개 업체가 전부 다 또 소송을 내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그래서 종부세하고 재산세 합해서 총 천팔백몇십억……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10배가 더 큼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10배가 더 크고 이래서 이것이 입장은 곤란한데 사실로는 지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이것을 소송으로 가서 하게 되면 또다시 소송을 할 건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찾기 어렵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방법 그러니까 구제방법이 있는데 지금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말씀입니다. 법으로 소급해서 이것을 정리하기에는 특례제도상의 큰 원칙에 저희가 좀 수용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지금 조금 더, 논점이 흐려진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현행 유지 시 추징해야 될 업체가 10개이지요, 그렇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그러면 이 법이, 만약에 지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보는 업체는 72개 업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환급을 해 줘야 되는……

○**이형석 위원** 환급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10개 업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을 소급입법을 만드시면 기존의 7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다 해 줘야 되는 사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법을 유지하면 10개 업체에 대한 추징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따가 다시 논의를 하십시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일단……

○**김민철 위원** 다른 안전하고 한 번 더 다루십시오.

○**소위원장 박재호** 예, 지금부터 제가…… 위원님들께서 자리 이석도 있고 이래서 놓쳤던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마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범위 확대, 민형배 의원안 건은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민형배 의원안.

○**김민철 위원** 신·재생에너지 부지 관련해서 종합재산세에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다음에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저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금 대한적십자사하고 국립병원에 대한 특례, 한병도 의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남대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해 대비, 그러니까 19년 대비 2020년 수익이 23배 정도 감소하는 이런, 코로나 감염병 관리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저는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박물관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취득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위원장 박재호** 박물관, 그것은 누구 법안입니까?

○**백혜련 위원** 김민기 의원님 법안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기 의원님 법안.

○**백혜련 위원** 예, 지난번 자료 217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됐습니까?

다음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아까 얘기한 자유총연맹 관련인데……

○**소위원장 박재호** 자유총연맹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명수 위원** 저는 새마을중앙회하고 같다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아까 김영배 의원안 낸 대로 그렇게 해주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대한적십자사 관련해 가지고……

○**소위원장 박재호** 대한적십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고려해서 좀 그대로 해야……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그렇게 3건하고 아까 남은 2건하고 한 20분 정도 조금 휴식을 취하고, 취하는 동안 행안부차관님께서 좀 정리를 하시고 수석님도 정리를 하셔서 서로 가능할 수 있는 안을 많이 만들어 갖고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형석 위원** 위원장님, 시멘트세 관련해서 그 내용도 같이……

○**소위원장 박재호** 시멘트세도 조금 이따가 할 것 아닙니까?

○**이형석 위원** 이따가 이야기를 해야지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소위원장 박재호** 같이 할 거예요.

정회를 했다가 4시 50분에 합시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그러면 미결 쟁점이 시멘트세까지 하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보류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시멘트세 관련한 것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두 가지 쟁점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1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34번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낱장으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217쪽이라고 되어 있는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취득세·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여 100% 감면하는 내용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인데 정부안에서는 연장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을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정부안대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박물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목적세 성격인 도시지역분에 대한 감면만 종료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유지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백혜련 위원 지금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 시설 같은 건 뭐가 있어요, 혹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원칙상으로 도시지역분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소방분에 대해서는 목적세기 때문에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한센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아주 취약계층이 아닌 이상은 목적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정부안을 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단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데에서 도시지역분 감면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왜냐하면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등은 도시지역 내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은 도시행정을 유

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경비 목적으로 걷는 목적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라든가 교통유발 등등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걷는 목적세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면하기 시작하면 지방세정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백혜련 위원 그동안은 사실 감면됐었잖아요. 그동안 감면이 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럼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동안에는 이 감면제도가 체계화가 안 돼서 목적세 부분까지 감면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다 종료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도 종료 대상이 된 겁니다.

○백혜련 위원 지금 그러면 종료되지 않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한센인이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백혜련 위원 장애인 이 부분만 종료 안 됐고 나머지 다 종료됐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나머지 부분은 일몰이 오는 대로 목적세 부분은 배제하는 것으로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이것 정리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도시지역분……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세.

○백혜련 위원 종료된 것……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규모가 커서 소방 수요를 유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도시지역분은 감면을 모든 걸 종료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한센인이나 이런 걸 빼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없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정확하게 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까 자충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백혜련 위원님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박물관 등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중에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중에서 도시지역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세금에서 비율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34억 정도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아, 재산세 전체 중에서 몇 %냐는 말씀이시지요?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 등에 대해서 면제되는 재산세 중에서 도시지역분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현재 재산세 감면액이 142억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정비 대상이 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34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니까 부과된 재산세 중에서 얼마가 빠지느냐는 말씀이시지요?

○백혜련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15%……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142억 원인데 그중에 34억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재산세 모수는 감면이 되는 거고요. 그중의 일부분인 목적세 부분만 빠지는 겁니다. 3년 연장을 했고요.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71쪽부터 표현이 되어 있는 라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자료입니다.

172쪽과 173쪽에 걸쳐서 간략하게 다른 법률 또는 다른 개정사항의 합의 부분과 정리해서 남아 있는 쟁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도 의원안Ⅲ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용 부동산 감면을 및 의료사업 외 사업용 부동산 감면을 확대하여 연장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은 사립대 부속병원의 감면을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의료기관의 형태가 거의 열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저희가 맞춰 놓은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이 의료기관들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설계를 해 놓은 거고요.

지금 개정안 나온 것 중에 국립대학병원이라는 대한적십자사 또 사립대 부속병원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특례가 더 인정되게 되면 다른 기타 병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다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의원님들 제안해 주신 것처럼 특정 한두 개만 이렇게 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차관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립대병원들 코로나19 이후의 경영 상황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워드 코로나라고 했지만 지금 오미크론이나 여러 가지 변이들 때문에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사립대도 저는 지원할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 형평성 때문에 지방세 특례를 두기가, 몇몇 군데만 두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저는 감염병 관련 전문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해서 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지금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10%p 추가로 감면을 일제히 올리면서, 위원님들 말씀이 이 병원들이 전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이 병원들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재산세나 이런 것들 한시적으로 특례 줬던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논의를 하시게요.

위원장님,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것은 통과를 할 필요가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정부안 유지 의견 속에 감염병 전문병원은 10%p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안 유지를 해도……

○이형석 위원 정부안 유지로 하지 마시고 다른……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추가로 더 검토……

○이형석 위원 추가로 더 검토를 하셔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면 보류하셨다가……

○이형석 위원 보류했다가 조금 이따가……

○소위원장 박재호 보류했다가 다시……

○이형석 위원 예, 다시 마지막 논의를 하자고요.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에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한이 3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이것은 통과가 돼야지……

○이형석 위원 그렇지요, 지금 해야 되니까.

○소위원장 박재호 아니, 이번 회기 같으면 오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오늘 결정하셔야 되는……

○소위원장 박재호 의결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형석 위원 좀 이따 안을 한번 주시라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논의……

○이형석 위원 마지막 결정할 때 하자 그 말이지.

○소위원장 박재호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안을 주십시오.

자,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범위 확대에 관한 자료, 80쪽으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쪽번호 80쪽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회의 정회 전에 민형배 의원안을 말씀하셨는데 민형배 의원안은 재산세 분리과

세 대상 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토지를 명시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우선 국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입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 일단 의원입법의 취지가 아마 형평성에서 처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소는 땅 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하고 땅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땅만 비교해서 일반 발전소는 분리과세인데 신·재생에너지는 높은 세율이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위에 있는 시설물까지 총괄적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세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입장에서 오하려, 그러니까 지금 과세를 안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사안이 지금 저희가 올해 분리과세 대상, 이게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법률로 올리는 것은 체계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올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부에서도 동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나 협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의 과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민철 위원 왜 되지요? 비용지 토지로 보나요? 비업무용 토지로 보냐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경제적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토지는 경제

적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합산과세 대상에는 비용지 업무를 갖다가 넣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예,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이냐는 토지의 이용 상태에 따라서 약간 나대지 비슷하면 종합합산이고 그래도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별도합산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전부 종합합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 구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볼 때 시설물이 세워져 있는데 시설물 그 부분만 뭐랄까 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 밖에 영향을 받고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이렇게 본다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비업무용·사업용 이런 구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땅에 처음 할 때의 목적에 맞는 시설물들이 들어섰느냐 이것이 구분점이 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예를 들면 1만 평에 풍력발전소가 섰다, 거기에. 그런데 처음에 5기만 세우기로 했는데 거기에 5기가 다 안 세워지고 예를 들어서 2기, 3기만 세워졌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거기에 1만 평에 5기가 다 세워져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땅이 남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비사업용으로 볼니까, 원래 계획에?

그러니까 이게 분리과세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분리과세나 합산과세나 기본원칙은 그렇고요. 지금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가 서는 그 땅의 용도가 원래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었었고요. 농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해상도 있고 죽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이 시설물들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돼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게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이 땅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김민철 위원** 그래서 그 구분을 처음에 계획서를 낼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 계획서 안에 포함이 되면 거기에도 같이 비과세가 돼야지 맞는 거라는 뜻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려면 원래 태양광이 서 있던 그 땅 전체 용도가 전환돼야 되는데

사실은 농지나 산지의 일부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철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합산과세가 됐던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시행령에 죽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이 전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합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상들이. 그런데 의원님 안은 거기서 신·재생에너지 되는 부분만 빼서 분리과세를 하자라고 이렇게 법률로 안을 내셨고요.

○**김민철 위원** 그렇지요, 법률로 올리자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 다른 것들과 이게 형평이 맞아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지금 시행령의 많은 부분 중에 딱 이것만 두 개 떼어서 법률로 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철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추후에 검토해서 김민철 위원님한테 또 법안을 내신 의원님한테 갖다 드리고 시행령으로 더 보완할 게 있는지, 법을 다시 전체적으로 만들 것인지를 확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자료 5-2번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 시멘트세를 도입하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2의 19쪽부터입니다. 19쪽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관해서는 시멘트 생산 톤당 1000원의 과세를 하자는 의견과 톤당 500원의 세율로 과세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오전에 이야기했던 대로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산자부 나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산자부도 아침에 이야기했던 대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하고 애쓰신 것은 너무 잘 압니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도 아직 세부적인 합의가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멘트, 물론 전남 광주에서도 상당한 생산을 하지만 강원도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 의사 합치가 안 된 것 아닌가, 조금 더 위원장님이 중재하셔서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하면 하는 것이 우리 야당 위원들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 논의가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되어 왔었고 또 21대 국회에 와서도 지금 2년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고 이제 어느 정도 지역자원시설세, 특히 시멘트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 상황을 지금 현재 더 감내하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다시 또 계류되면 굉장히 지역 주민들께서는 허탈할 것이다. 또 특히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1대 국회 이 시점에 이번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지역자원시설세, 시멘트세가 마무리되기를 저는 간곡히 희망을 합니다.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시기상조다 또는 지역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그런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특히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업계에서는 시멘트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기금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금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 자료를 내 달라고 해도 정확한 자료를 주지 못합니다. 주지 못하고 있어서 기금 운용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는 우선 법을 만들어서 2년간 유예하면서 그리고 2년간은 기금을 통해서 어떻게 업계가 대응하는지를 보고, 법안을 먼저 만드는 게 저는 지금 이 시점에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건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입장 마지막으로 듣고 산자부 입장 마지막으로 듣고, 이것은 여야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기금안이 나와서 마치 새로운 대안인 것으로 또 이해가 되는데요. 예전에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기금 조성 및 운영안에 KPC, 한국생산성본부를 넣어 가지고 관리해 보겠다라고 하는 안을 내는 건데요.

기금 조성액이 250억을 상회한다고 주장을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나와 있는 세 설정 액수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세 신설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되 일정 기간 유예를 하면서 기금의 조성 및 운영 형태를, 성과를 확인하고 추후에 논의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산자부 나오셔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산업부의 소재산업국장 최우석입니다.

19년도에 시멘트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그 이후에 사정변경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안타깝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좀 더 열심히 기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뭐니뭐니해도 탄소중립 그리고 20년도에 새로이 미세먼지 환경부담금이 설정이 되어서 환경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 여부하고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 기금의 적정성 그다음에 기금의 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법과 관련 없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매년 기금의 사용 용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보고드리겠

다는 말씀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년도에는 아마 탄소세 문제도 분명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산업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일된 입법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게 저희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잘 알겠습니다.

또 뭐 할 이야기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장님, 지역에서도 와 있으니까 마지막……

○소위원장 박재호 지역 이야기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마지막 한번 들어 주시면……

○소위원장 박재호 마무리 이야기를 하십시오.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서승우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일부 의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회의 참석하면서 주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관련해서는 강원도하고 충북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어서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0월 달에는 시·도지사가 충청, 충북, 전남, 경북에서 공동 건의를 했고요. 9월 달에는 시멘트 생산지역 시장·군수 공동 건의, 강릉 동해 삼척도 시장·군수들이 공동 건의를 했습니다.

12월 달에는 충북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 11개 시군이 다 공동 건의를 했고요. 또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멘트 생산지역 시군 의장들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의견이 어떻게 되는 거냐, 강원 충북 전남 시·군의회 의장들이 공동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저희들이 다시 한번 12월 달에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 의장단,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12월 달에 공동 건의를 해서 현금성 지원을 받는 일부 지역 주민을 제외하고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단체장, 의장, 대부분의 주민들은 안정적인 어떤 세원, 지역 발전이나 주민 보호라든지 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여야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다 다르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자로 하기에는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행안위의 운영상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의견은 속기록에 남겨져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기금을 250억 마련해서 생산성본부에 맡긴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용처 이런 것을 국회에도 보고하고 그 시도에도 보고를 전부 다 해 주셔서 얼마나 투명하게, 얼마나 더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일단 1년 동안 우리가 지켜본 후에 이 법안을 다시 한번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이 내용은 끝내겠습니다.

다음 다른 것은……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세 가지 정도, 아까 6권에서 논의하셨던 것 중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72쪽입니다.

72쪽 부분에서는 추정 요건 완화에 3년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는 부분을 서범수 의원안과 김민철 의원안에서 5년,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그리고 김민철 의원안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렇게 완화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김민철 의원님 안에서 이 사이에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4년 정도로 1년 더 연장해서 산업단지 촉진과 징수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민철 위원 예.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됐습니다.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아까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논의하셨었는데 한 번만 더 하자

고 말씀이 게서서……

○소위원장 박재호 아까 정부 측 의견이 어땠지요?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백혜련 위원 아까 재산세·취득세 100% 1년간 감면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김영배 의원님 안에서 목적세 부분인 도시지역분만 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마지막으로 6권의 106페이지, 산단의 담보신탁의 경우에 분리과세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것 아까 논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 문제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소급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정부 측 의견이었고,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해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는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72개 업체 현행을 유지,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10개 업체에 대한 추징,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이것은 어쨌든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이 너무나 완강하고 또 여야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눠서 이 문제를 소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양극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입법 불비에 대한 책임을 저는 두 번 전가시킨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걸 소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개 업체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가 버리면, 저는 행안부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입법 불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보는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든 그 업체들을,

기업들을 구제하고 또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서 행안부가 결정을 내려야지, 72개 업체가 기존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소급입법 했을 때 이걸 다시 반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개 업체에 대해서 추징을 한다, 이걸 악을 악으로 덮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소위원장 박재호 행안부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 문제의 본질은 입법의 미비이거나 특례제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 이해가 미숙해서 적용에 어떤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정업무상에서 나타나는 그 부분은 또 별다른 문제이고요, 이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례제도는 워낙 복잡하고 또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특례가 정리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수시 교육도 시키고 시스템 구현을 합니다만 일부에서 미숙해서 잘못 판단했던 부분에 대한 관례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 특례제도를 소급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누누이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어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저는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한두 개만 더 보태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위원장님, 오늘 소위에서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될 수 있지요? 그때 바꿀 수도 있지요?

○소위원장 박재호 예.

○김형동 위원 차관님, 만약에 일부 지자체가 소송을 당해서, 피소를 당해서 패소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지자체가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문제라는 표현을 수석님이 쓰셨고 신중 검토가 정부 의견인데 그러면 최종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조세에 관해서 소송이 되면 저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합니다.

○김형동 위원 공동 대응해 가지고 졌을 때는 그러면 다 감당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 부분 사업자의 소송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은……

○**김형동 위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흔히 말하는 신뢰의 원칙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 주고 약속했는데 법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말을 믿고 투자도 하고 설비도 넣고 이렇게 했던 기업이 있다 합시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기업이 질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이것 뭐 제 사건입니다마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이 분쟁 해결이 법원으로 가서 서로 상호간의 갈등, 거기에 대해 소모되는 비용 또 나중에 감당해야 될 비용, 그런데 결과는 뭐냐 하면 그 기업은 더 이상 그 지자체의 그 공단에, 그 산단에 머무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요. 그 피해는 단순히 지자체와 기업의 갈등 문제가 아니고 하나 더 나아가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피해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더 큰 것도 결단을 내렸는데 의회에서 입법적 결단을 내리도록 집행부가 의견을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순히 그 추정액 얼마가 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가져올 파장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도, 특히 거기에 매여서 일터로 삼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이 문제는 제가 어제 말씀 좀 드렸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정부야 또 지자체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지만 이 어려운 기업들이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피해이고 우리나라 산업에 물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10개 기업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행안부가 잘못했다, 잘했다, 법적으로 어떻다 그것은 법원에 가서 판단할 일이지만 일단 이 의견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일단 통과를 시키고 전체회의에 가서 한 번 더 의논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재차 확인해 본 결과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다수 지자체

는 정상적으로 과세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과세 집행을 한 지자체와는 다르게 일부 미숙했던 부분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소급입법으로 다 한다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지자체는 환급을 해 줘야 되는 더 큰 사태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세행정상 큰 신뢰의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조세행정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소위에서 의결하시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판단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김민철 위원** 이 정도로 이것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의견은 있겠지만 정부안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 했습니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이형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정부에 안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여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의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현재 정부안으로 나와져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10% 추가와 거기 저희가 제한적으로 묶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재산세는 취득한 지 5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면을 해 줘는데 그 5년이라고 하는 제한을 벗겨내면 모든 의료기관에 공히 혜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방법이 어떠신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어떻습니까?

○**이형석 위원** 지금 이것은 특정 국립병원이나 이런 한 군데만 때내서 법안을 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방금 차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는 의료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

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그렇게 고쳐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일단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씩 검토를 마쳤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안 유지 상태에서 플러스 5년 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히 모든 의료기관에 혜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마지막 부칙 수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과 논의해서 위원장님 대안에 대한 부칙 수정안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소위원장 박재호 예.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오늘 추가 논의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오전까지 의결된 부분과 오후에 논의된 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 등등으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용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다 보고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4쪽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 결과에서 81번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라고 표시했던 것 중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방금 전에 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형자동차는 75만 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하셨고, 그리고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3년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정리하셨고, 그리고 산업단지 등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는 김민철 의원안처럼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4년간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1년간 하였고, 그리고 감면 제외 대상에 별장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보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은 정부 제출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소수의견이 일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과된 부분이 앞에 있고 13쪽을 잠깐 보시면 화력발전 세율 인상부터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 세율 인상은 킬로와트시당 0.6원으로 해서 수정 통과시켜 주셨고 그리고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레저세 장외발매소분 안분 비율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20%로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개인분 세율의 읍면동 차등 부과 근거는 정부 제출안과 같이 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담보신탁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단 정부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내 왔기 때문에 정부 의견대로 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은 일부 수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대안과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형자동차는 75만 원이 1875만 원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75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이우종 75만 원의 한도에 걸리는 자동차 가격이 1875만 원입니다.

○이형석 위원 그러면 75만 원으로 하면 맞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맞을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 위원님.

○이영 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6페이지에 27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에 관해서 심사 결과는 통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일몰기한에 대한 연장만이 지금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과표 상향이란 오피스텔 포함 여부를 한 번 더 논의했으면 한나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것 가능합니까? 오늘 통과되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오늘 소위에서는 정부안 유지로 의결을 해 주시고요. 전체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박재호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제6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되 의사일정 제4항과 제156항부터 제161항까지 그리고 제162항부터 제166항까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1항의 법률안은 발의 취지상 심의할 내용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서는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제24항, 제28항부터 제38항까지, 제40항, 제43항부터 제46항까지, 제48항 및 제49항, 제51항 및 제52항, 제54항부터 제71항까지, 제73항부터 제79항까지, 제81항, 제83항부터 제87항까지와 제89항부터 제97항까지, 제99항부터 제108항까지와 제111항부터 제128항까지 이상 9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되 의사일정 제14항, 제19항, 제23항,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제39항, 제41항, 제42항, 제47

항, 제50항, 제53항, 제72항, 제80항, 제82항, 제88항, 제98항, 제109항 및 제110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9항부터 135항까지와 제139항부터 제155항까지 그리고 제167항부터 제184항까지 이상 4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33항, 제139항부터 제141항까지와 제143항, 제145항, 제146항과 제151항 및 제153항, 제168항부터 제175항까지와 제177항부터 제180항까지 그리고 제182항부터 제184항까지의 법률안은 발의 취지상 심의할 내용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입니다.

의사일정 제136항부터 제13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되 의사일정 제185항부터 제197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번호 중 일부 정정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방세법 관련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규창 차관님 지방세법 심의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3일간 이어진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서 지방세제와 관련된 5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과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자

치단체의 원활한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이 집행 과정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뿐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서 향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각 의원실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연속으로 지방세법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숙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장기간 설명과 정리로 고생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 공무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방세법과 관련한 법안심사소위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민철	김형동	박재호	백혜련
이명수	이영	이해식	이형석
최춘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고규창	
지방세정책관	이우중	
경찰청	우철문	
수사기획조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	